

경남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중소기업정책 종합정보지입니다.

2026년
2월호

이 달의 중소기업 지원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KOSME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KIBO 기술보증기금 KDBIT 신용보증기금 (재)경남테크노파크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Gyeongnam Center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 경남신용보증재단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창원상공회의소
- KBIZ 중소기업중앙회 RIPC 경남지식재산센터 GIBIA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김해의생명 산업진흥원 중소기업24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Biz info 원스톱 전화번호 1357

본 자료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목 차

1.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글로벌선도기술개발(수출지향형)	1
②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K-뷰티)	3
③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소셜벤처)	5
④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기술이전사업화)	7
⑤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구매협력_국내수요처)	9
⑥ 2026 년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12
⑦ 2026 년도 도약창업패키지(일반형)	16
⑧ 2026 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	20
⑨ 비즈니스지원단 애로상담 및 현장클리닉	21
⑩ 한국은행 경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C2) 신청 안내	22
⑪ 기업 규제.애로 상담 및 해소 지원	24
⑫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	25

2. 창원고용복지+센터

① 기업지원종합서비스	26
②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8
③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육아기 10 시 출근제)	32
④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34
⑤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36
⑥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40
⑦ 정규직 전환 지원	46
⑧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48
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0
⑩ 고용유지지원금	52

3. [재]경남테크노파크

①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	54
② 경남 디지털 혁신거점 R&BD 지원 통합 공고(디지털 기업 in 경남)	55

4. 경남투자경제진흥원

①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56
② e 경남몰 운영	57
③ 소비재 수출 초보기업 O2O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58
④ 양산시 소비재 수출 초보기업 O2O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59
⑤ 경남 모범장수기업 지원사업	59
⑥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	60
⑦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60

5.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① 2026 년 CORN 프로젝트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61
② 경남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사업	62
③ 2026 창업-BUS	63

6. 경남신용보증재단

①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특별보증	64
② 경남형 강한 중소기업 성장지원 특별보증	64
③ 장수기업 소상공인 특별보증	65
④ 성실상환기업 THE DREAM 특별보증	65
⑤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66

목 차

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

① 2026년 1~2월 직무역량향상연수 과정 안내	67
② 기업 맞춤형연수 안내	68
③ K-기업가정신센터 안내	69
④ 부산경남연수원 시설 대관 안내	70

8. 기술보증기금 부울경지역본부

① 2026년 기술보증기금 중점 지원분야	71
------------------------	----

9.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

① 신속위기대응 특례보증	72
② Easy-One 보증	73

1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①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1분기 접수 개시	74
②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1분기 접수 개시	75
③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사업	77

11.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①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	78
②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 Plus+) 제도	79
③ 환변동보험 제도	80
④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제도	81
⑤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제도	82
⑥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83
⑦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84
⑧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85

12.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① 지역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87
-----------------------	----

13. 경남지식재산센터

①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원사업	88
② 중소기업 지식재산 긴급지원	89
③ 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9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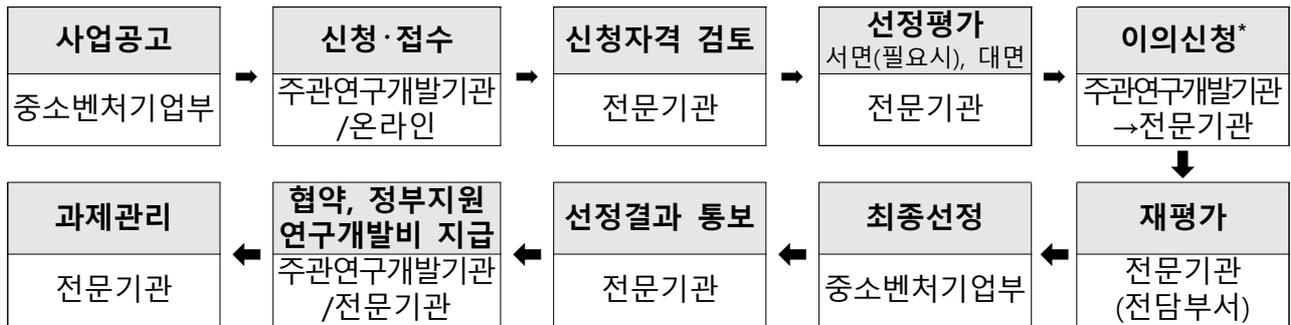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

글로벌선도기술개발(수출지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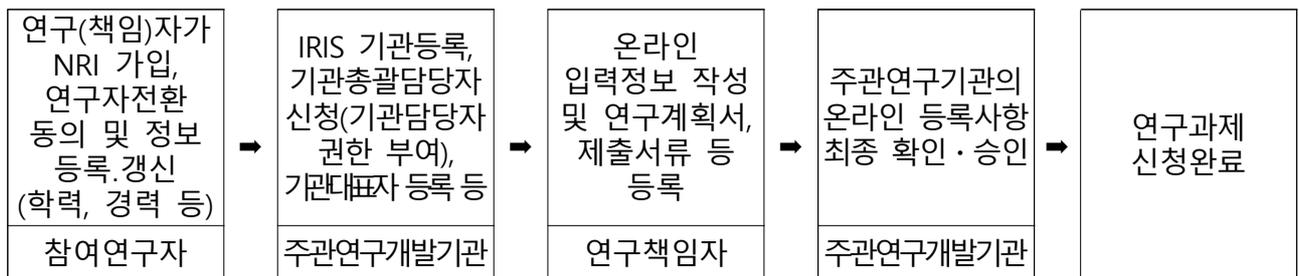
- (사업목적)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168억원, 45개 과제 내외(전국)
- (지원기간 및 한도) 최대 2년, 1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최근년도(전전년도까지 인정)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26.1.1.부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의 수출실적(계약금액 포함)도 수출실적에 포함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6일(월) ~ 2월 9일(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프로그램	042-251-1850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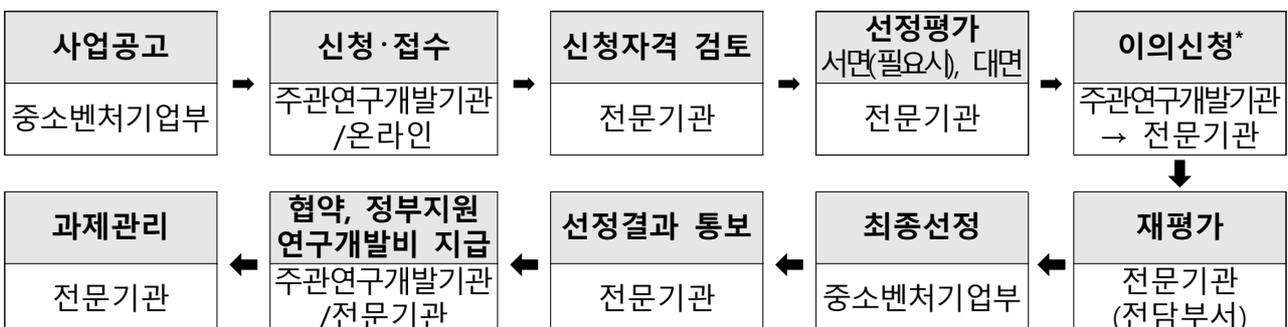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2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K-뷰티)

- (사업목적)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18억원, 10개 과제 내외(전국)
 -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및 한도)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 평균단가 4.8억원 이내(연 2.4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지원유형 및 분야 : 화장품 산업 원료·부자재 4개 분야 內 자유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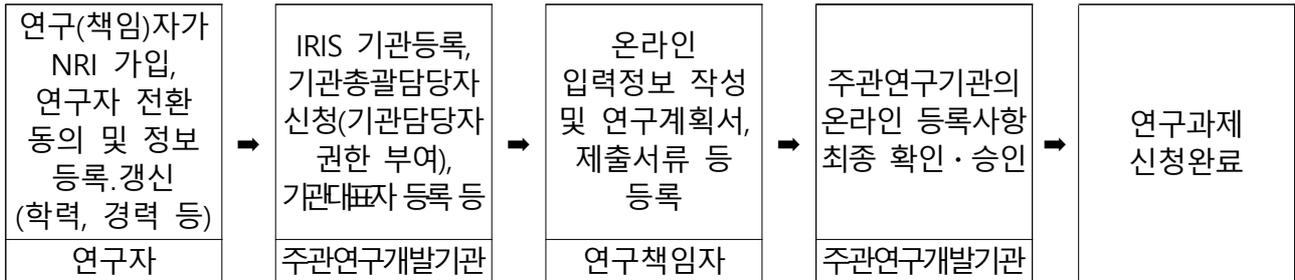
분야	주요내용
기능성 원료	· 피부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염색, 모발 및 두피 건강 케어 등 기능성 화장품의 용도별 기술개발
친환경 부자재	·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분해용기, 플라스틱 대체소재 등을 활용한 화장품용 친환경 부자재 기술개발
미용기기	· 가정용 뷰티기기(LED 마스크, 스킨 스캐너 등), AI 데이터 기반 측정 기기, 모바일 연동 뷰티기기 등 ICT·AI·센서 기술과 결합된 스마트 뷰티 기술개발
더마코스메틱	· 피부과학·의학적 효능 입증 화장품(아토피 치료 등), 바이오 융합 화장품(마이코로바이옴 등) 등 의약과 화장품 융합분야 기술개발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6일(월) ~ 2월 9일(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프로그램	042-251-1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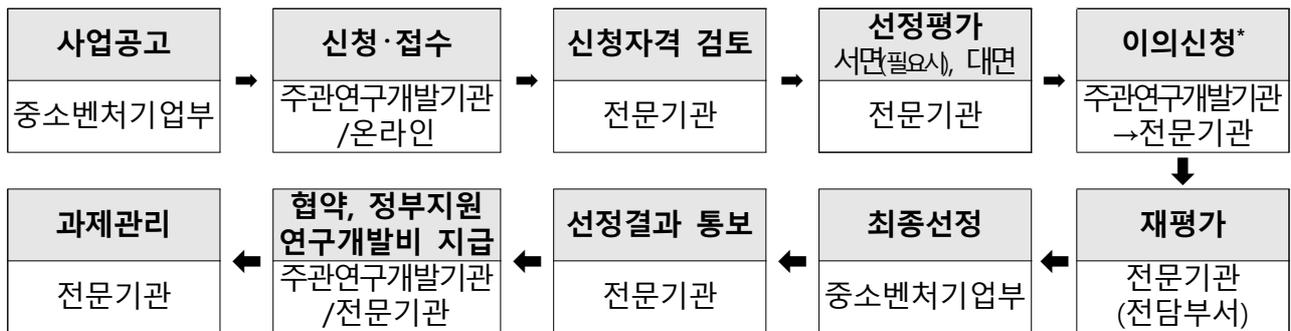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3 |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소셜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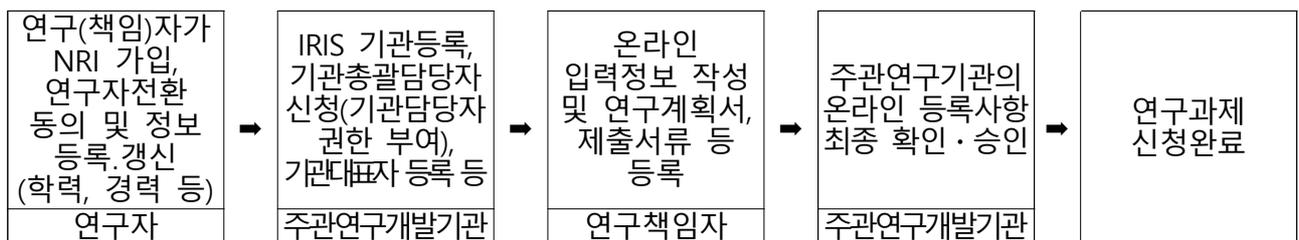
- (사업목적) 복합적 사회문제(기후위기, 고령화, 양극화, 지역격차 등) 심화에 따라, 지속 가능한 혁신 기반의 사회적가치 지향형 R&D 지원
- (지원규모) 9억원, 5개 과제 내외(전국)
 -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및 한도)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 평균단가 4.8억원 이내(연 2.4억원 이내)
- 지원대상
 - 「기술보증기금(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통해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공문을 받은 중소기업
- 지원유형 및 분야 : 사회안전망, 양질의 교육,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 내 자유공모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6일(월) ~ 2월 9일(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프로그램	042-251-1850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1lfqd

4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기술이전사업화)

- (사업목적)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급-수요간 기술성숙도 간극 최소화
- (지원규모) 200개 과제 내외, 200억원 내외(전국)
- (지원기간 및 한도) 9개월, 1억원
 -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이전 예정확인서'를 받아 과제 신청

구 분	지원규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정부	주관기관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PoC·PoM	9개월, 1억원	75% 이내	25% 이상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기술이전 예정확인서(또는 기술이전 계약서)'를 받은 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이전 예정인 대학·연구기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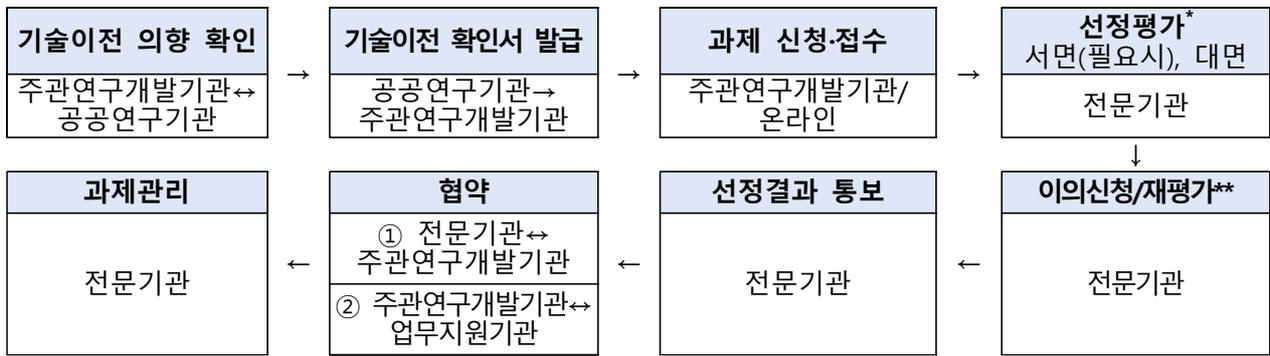
- 지원내용 및 방법: **1단계(PoC·PoM)** → **2단계(사업화R&D)**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을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급성이 높은 시장지향적 과제의 고도화를 위해 기술이전 매칭이 성사 또는 예정된 기술에 대한 단계적 기술개발 지원

구분	지원내용
1단계 PoC·PoM (26년 지원, 9개월)	- (PoC) 기술 분석, 지적재산 전략분석, 기술 개념 구체화 및 개발 방법, 목표치 고도화 등 - (PoM) 국내·외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 등 - (IP-R&D) 기술 전·후방 IP 융합 전략, 권리관계 조율 등 지원
2단계 사업화R&D (27년 지원, 24개월)	- 기술개발 및 실증

* '27년 2단계 사업화R&D 과제 선정 시 공공기술거래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기술보증기금), IP 마켓(발명진흥회))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수

** **본 공고는 '26년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PoC·PoM) 지원만 해당하며,** '26년 1단계 수행 완료 과제 대상 '27년 2단계 공고 접수 및 선정평가를 통해 2단계(사업화R&D) 지원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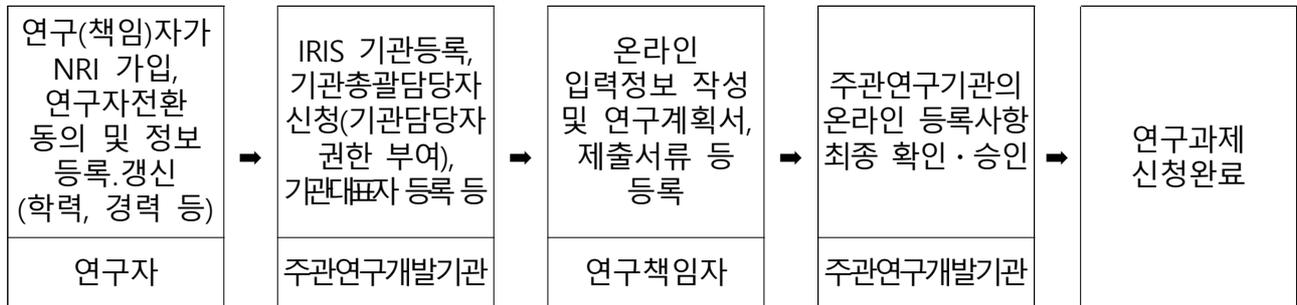
□ 선정절차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접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9일(목) ~ 2월 12일(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IRIS시스템	IRIS시스템 통합관리	시스템 오류 등	1877-2041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5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구매협력_국내수요처)

- (사업목적) 국내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지원규모) 44개 과제 내외, 95억 원 내외(전국)
- (지원내용) 국내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및 한도) 최대 2년, 6억원 이내
 - 중소기업이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구 분		지원규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개발비 비중			수요처
			정부	주관	수요처	
구매연계형 (국내수요처)	구매동의서	최대 2년, 6억원	75% 이내	12.5% 이상	12.5% 이상	대·중견기업, 중소기업,기타
	구매계약서		75% 이내	25% 이상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기타

* 수요처(대·중견, 중소기업)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 구매의무 발생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국내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 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구매연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 (국내수요처)

- ① 대·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 기업,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구분	내용	비고
업종	제한없음	중소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등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업력	창업 5년 초과	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
매출액	300억원 이상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신용등급	BB(bb-) 이상	한국기업데이터(크레탑) 등급 기준 등

-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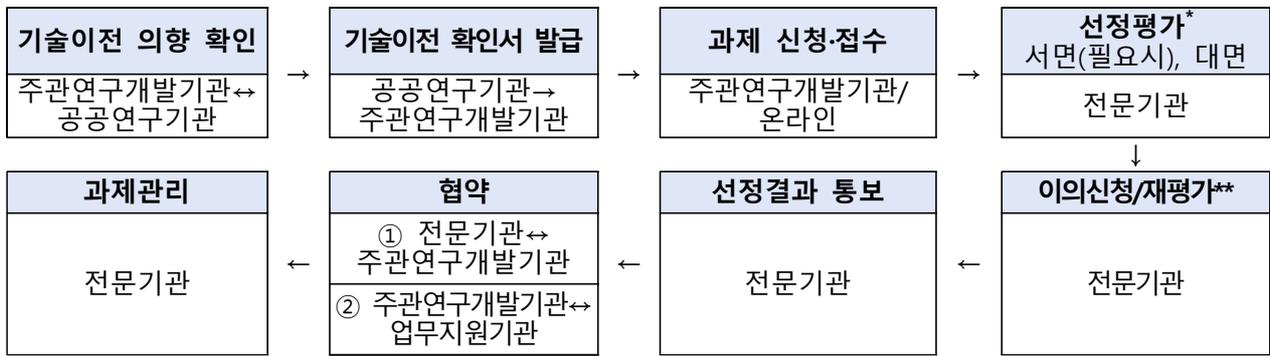
□ 지원내용 및 방법: **1단계(PoC·PoM)** → **2단계(사업화R&D)**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을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급성이 높은 시장지향적 과제의 고도화를 위해 기술이전 매칭이 성사 또는 예정된 기술에 대한 단계적 기술개발 지원

구분	지원내용
1단계 PoC·PoM (’26년 지원, 9개월)	- (PoC) 기술 분석, 지적재산 전략분석, 기술 개념 구체화 및 개발 방법, 목표치 고도화 등 - (PoM) 국내·외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 등 - (IP-R&D) 기술 전·후방 IP 융합 전략, 권리관계 조율 등 지원
2단계 사업화R&D (’27년 지원, 24개월)	- 기술개발 및 실증

- * '27년 2단계 사업화R&D 과제 선정 시 공공기술거래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기술보증기금), IP 마켓(발명진흥회))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수
- ** **본 공고는 '26년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PoC·PoM) 지원만 해당하며**, '26년 1단계 수행 완료 과제 대상 '27년 2단계 공고 접수 및 선정평가를 통해 2단계(사업화R&D) 지원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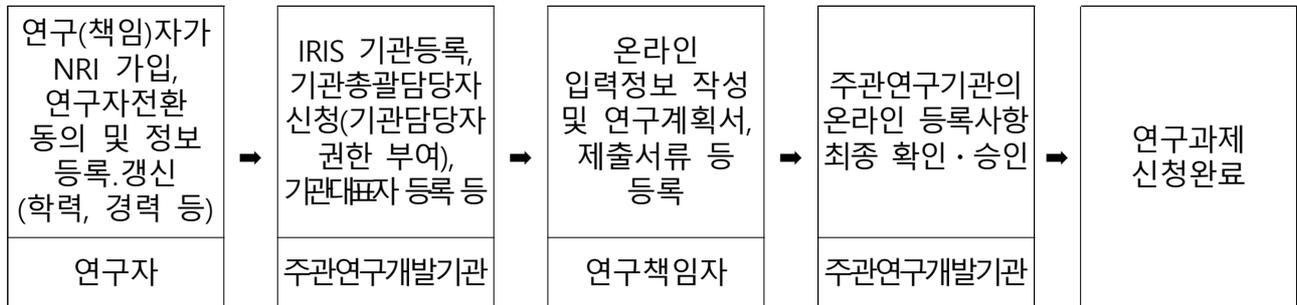
□ 선정절차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접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9일(목) ~ 2월 12일(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IRIS시스템	IRIS시스템 통합관리	시스템 오류 등	1877-2041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6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 (사업목적)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 및 성장 지원
-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 신청자격은 동 공고 '3.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6. 4월 ~ '27. 1월 예정)
- (지원분야 및 선정규모)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 총 400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 >

권역	주관기관명	선정규모	권역	주관기관명	선정규모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고려대학교	22개사 내외	동부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20개사 내외
	단국대학교	20개사 내외		경북대학교	21개사 내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2개사 내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1개사 내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24개사 내외		동아대학교	19개사 내외
	수원대학교	23개사 내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22개사 내외
	씨엔티테크	25개사 내외		영산대학교	19개사 내외
	인하대학교	23개사 내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21개사 내외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국립한밭대학교	21개사 내외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포함)	국립순천대학교	20개사 내외
	순천향대학교	19개사 내외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19개사 내외
	한국수자원공사	19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창업기업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권역 내 주관기관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 필수**이며, 타 권역 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평가대상 및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창업프로그램*
시장진입, 투자유치, 실증 검증 등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운영

*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은 '공고의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 (세부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5억원 (최대 1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 자기부담사업비*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¹⁾지방우대 지역(특별지원 지역, 우대지원 지역, 일반지역)과 ⁽²⁾지방우대 비해당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는 본점을 기준으로 함 - (지방우대 지역)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 반영한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①특별지원, ^②우대지원, ^③일반지역으로 나누어 자부담 차등 부담 (지역 분류는 [붙임 6] 참조) * ① (특별지원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 및 예타 낙후도 평가 하위 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 ② (우대지원 지역)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 ③ (일반지역) 비수도권 지역 중 특별·우대지원이 아닌 83개 시·군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지방우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li style="text-align: center;"><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자기부담사업비 비율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0%;">특별지원 지역</th> <th style="width: 20%;">우대지원 지역</th> <th style="width: 20%;">일반지역</th> <th style="width: 25%;">지방우대 비해당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자기부담사업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5%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0% 이상</td> </tr> <tr> <td>정부지원사업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9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8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7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70% 이하</td> </tr> </tbody> </table>	구분	특별지원 지역	우대지원 지역	일반지역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자기부담사업비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30% 이상	정부지원사업비	90% 이하	80% 이하	75% 이하	70% 이하											
	구분	특별지원 지역	우대지원 지역	일반지역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자기부담사업비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30% 이상																						
	정부지원사업비	90% 이하	80% 이하	75% 이하	7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부담사업비는 현금 및 현물로 구성(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비율 상이)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p>< 총사업비 구성 기준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총사업비</th> <th rowspan="2">정부지원사업비</th> <th colspan="2">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th> </tr> <tr> <th>현금</th> <th>현물</th> </tr> </thead> <tbody> <tr> <td>특별지원 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총사업비의 90% 이하</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또는 현물)</td> </tr> <tr> <td>우대지원 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총사업비의 8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사업비의 1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사업비의 10% 이하</td> </tr> <tr> <td>일반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총사업비의 7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사업비의 1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사업비의 15% 이하</td> </tr> <tr> <td>지방우대 비해당 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총사업비의 7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사업비의 1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사업비의 20% 이하</td> </tr> </tbody> </table>	구분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특별지원 지역	100%	총사업비의 9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우대지원 지역	100%	총사업비의 8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10% 이하	일반지역	100%	총사업비의 75%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15% 이하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구분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특별지원 지역	100%	총사업비의 9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우대지원 지역	100%	총사업비의 8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10% 이하																							
일반지역	100%	총사업비의 75%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15% 이하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p><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1억원인 경우) ></p>																											

구분	총사업비 (A=B+C)	정부지원사업비 (B)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C)	
			현금	현물
특별지원 지역	111,120천원	100,000천원	11,120천원	
	(100%)	(90%)	(10%)	
우대지원 지역	125,000천원	100,000천원	12,500천원	12,500천원
	(100%)	(80%)	(10%)	(10%)
일반지역	133,340천원	100,000천원	13,340천원	20,000천원
	(100%)	(75%)	(10%)	(15%)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142,860천원	100,000천원	14,290천원	28,570천원
	(100%)	(70%)	(10%)	(20%)

* 정부지원사업비는 창업기업이 신청한 사업비 규모를 초과하여 배정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시스템 접수 '사업비'가 상이할 경우,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 추후 확정된 정부지원사업비 및 지방우대 여부 등에 따라 창업기업의 자기부담 사업비 및 비율이 변경 될 수 있음

창업 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초기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유형	프로그램 예시
	① 시장진입	판로개척, 네트워킹, 민간 연계, 글로벌 연계
	② 투자유치	투자 교육, 모의 및 실제 투자 IR
	③ 실증 검증	멘토링, 기술 실증 등
④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이 초기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3]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후속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 연계 보증상품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	---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 (접수기간) '26년 1월 23일(금) ~ 2월 13일(금), 16:00까지
-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신청·평가·선정 등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7

2026년도 도약창업패키지(일반형)

(사업목적)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도약기 창업기업)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업력 미충족 기업 중 '23~'25년 초기창업패키지, '23~'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3~'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5]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신청 가능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 ('26.4월 ~ '27.1월 예정)

(지원분야 및 선정규모)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 총 300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 >

권역	주관기관명	선정규모	권역	주관기관명	선정규모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31개사 내외	동부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강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24개사 내외
	부천산업진흥원	30개사 내외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28개사 내외
	인천테크노파크	30개사 내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4개사 내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9개사 내외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9개사 내외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포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5개사 내외
	한국수자원공사	26개사 내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24개사 내외

* 신청·접수 현황에 따라 주관기관별 선정규모 변동 가능

** 창업기업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권역 내 주관기관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 필수**이며, 타 권역 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평가대상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평균 1.2억원 내외, 최대 2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구분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 창업기업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자금 지원
창업프로그램	•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도약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은 '공고'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 (세부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 등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사업모델 (BM) 혁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1.2억원 (최대 2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 자기부담사업비*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¹⁾지방우대 지역(특별지원 지역, 우대지원 지역, 일반지역)과 ⁽²⁾지방우대 비해당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용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는 본점을 기준으로 함 - (지방우대 지역)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 반영한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①특별지원, ^②우대지원, ^③일반지역으로 나누어 자부담 차등 부담 (지역 분류는 [붙임 6] 참조) * ① (특별지원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 및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 ② (우대지원 지역)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 ③ (일반지역) 비수도권 지역 중 특별·우대지원이 아닌 83개 시·군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지방우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자기부담사업비 비율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지원 지역</th> <th>우대지원 지역</th> <th>일반지역</th> <th>지방우대 비해당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자기부담사업비</td> <td>10% 이상</td> <td>20% 이상</td> <td>25% 이상</td> <td>30% 이상</td> </tr> <tr> <td>정부지원사업비</td> <td>90% 이하</td> <td>80% 이하</td> <td>75% 이하</td> <td>70% 이하</td> </tr> </tbody> </table>	구분	특별지원 지역	우대지원 지역	일반지역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자기부담사업비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30% 이상	정부지원사업비	90% 이하	80% 이하	75% 이하	70% 이하											
	구분	특별지원 지역	우대지원 지역	일반지역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자기부담사업비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30% 이상																						
	정부지원사업비	90% 이하	80% 이하	75% 이하	7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부담사업비는 현금 및 현물로 구성(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비율 상이)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p style="text-align: center;">< 총사업비 구성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총사업비</th> <th rowspan="2">정부지원사업비</th> <th colspan="2">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th> </tr> <tr> <th>현금</th> <th>현물</th> </tr> </thead> <tbody> <tr> <td>특별지원 지역</td> <td>100%</td> <td>총사업비의 90% 이하</td> <td colspan="2">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또는 현물)</td> </tr> <tr> <td>우대지원 지역</td> <td>100%</td> <td>총사업비의 80% 이하</td> <td>총사업비의 10% 이상</td> <td>총사업비의 10% 이하</td> </tr> <tr> <td>일반지역</td> <td>100%</td> <td>총사업비의 75% 이하</td> <td>총사업비의 10% 이상</td> <td>총사업비의 15% 이하</td> </tr> <tr> <td>지방우대 비해당 지역</td> <td>100%</td> <td>총사업비의 70% 이하</td> <td>총사업비의 10% 이상</td> <td>총사업비의 20% 이하</td> </tr> </tbody> </table>	구분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특별지원 지역	100%	총사업비의 9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우대지원 지역	100%	총사업비의 8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10% 이하	일반지역	100%	총사업비의 75%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15% 이하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구분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특별지원 지역	100%	총사업비의 9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우대지원 지역	100%	총사업비의 8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10% 이하																							
일반지역	100%	총사업비의 75%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15% 이하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p style="text-align: center;"><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2억원인 경우) ></p>																											

구분	총사업비 (A=B+C+D)	정부지원사업비 (B)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C)	현물(D)
특별지원 지역	222,230천원	200,000천원	22,230천원	
	(100%)	(90%)	(현금 또는 현물 10%)	
우대지원 지역	250,000천원	200,000천원	25,000천원	25,000천원
	(100%)	(80%)	(10%)	(10%)
일반지역	266,670천원	200,000천원	26,670천원	40,000천원
	(100%)	(75%)	(10%)	(15%)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285,720천원	200,000천원	28,580천원	57,140천원
	(100%)	(70%)	(10%)	(20%)

* 정부지원사업비는 창업기업이 신청한 사업비 규모를 초과하여 배정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시스템 접수 '사업비'가 상이할 경우,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 추후 확정된 정부지원사업비 및 지방우대 여부 등에 따라 창업기업의 자기부담사업비 및 비율이 변경 될 수 있음

창업 프로그램

- (공통 프로그램)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확대 지원

구분	세부내용
후속투자 유치	투자단계 및 산업군별 IR 운영, 투자 애로 상담회 운영, IPO 주관사 네트워킹 및 출구전략 컨설팅 등
글로벌 시장 진출·확대	글로벌 선행기술조사 지원,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글로벌 투자사 연계 투자 IR 운영,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자율 프로그램) BM·기술 고도화, 마케팅·판로, 후속 지원, 네트워킹 등 창업기업의 특성·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3]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후속지원 프로그램

-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 연계 보증상품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도약기 창업기업 또는 패스트트랙 해당기업
- (접수기간) '26. 1. 23.(금) ~ 2. 13.(금) 16:00까지
-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신청·평가·선정 등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 행사개요

- (일시) 2026. 1. 15.(목) 14:00~17:00
- (장소) 경남도청 대강당(창원 의창구 중앙대로 300)
- (내용) '26년 중기부 및 경상남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경남중기청-경상남도-유관기관* 합동 설명회 개최
- * (유관기관) 경남테크노파크, 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진행순서) 정책메시지·방향 및 핵심과제 소개 → 분야별 사업설명
→ 1:1 기업 맞춤 상담
- (세부일정(안))

시간		진행사항	비고
식전		□ 정책 홍보영상 상영	
14:00~14:05	5'	□ 설명회 개회·안내	사회자
14:05~14:20	15'	□ 인사 말씀 및 2026년 중기부 정책방향	
14:20~17:00	160'	□ 지원사업 설명	
14:20~14:40	20'	○ 수출 지원사업	경남중기청
14:40~15:00	20'	○ 경남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경상남도
15:00~15:20	20'	○ 경남TP 지원사업	경남TP
15:20~15:40	20'	○ 기술개발 지원사업(R&D)	기술정보진흥원
16:00~16:20	20'	○ 창업 지원사업	창업진흥원
16:20~16:40	20'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6:40~17:00	40'	○ 보증(기술, 신용)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17:00~		□ 폐회	-
기관 합동 기업애로 상담장 운영			질의응답 및 상담

* 기업애로 상담장 : 발표기관 포함 지역 유관기관으로 구성하여 운영

** 운영 과정에서 기관별 발표 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055-268-2530)

9**비즈니스지원단 애로상담 및 현장클리닉**

- **(사업개요)** 경영·기술지도사, 회계사, 노무사, 관세사, 창업·벤처전문가, 마케팅·수출입 전문가 등 전문인력 Pool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술 애로를 상시 상담·해결해 드리는 “전문가 자문서비스”
- **(지원대상) 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대상이 다름**
 - 상담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각종 경영·기술상 애로가 있는 자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상담 : 비즈니스지원단(12개 분야별 33명 전문가)이 기업의 경영·기술 애로를 무료상담 지원(전화 및 경남청 방문상담)
 - 현장클리닉 :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은 중소기업 애로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단기간(평균 3일)에 문제 해결 지원
- **(지원비용)** 상담 무료, 현장클리닉 1일 35만원(정부 80%, 기업 20%)
- **(신청방법)**
 - 상담 : 전화(055-268-2546~8, 2594) 또는 방문(경남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1층 고객지원실)
 - 현장클리닉 : 홈페이지에서(<http://www.smes.go.kr/bizlink>) 신청
- **(문의처)**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창업 주무관(055-268-2594)

※ 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은 2월 중 개시

- **(사업목적)**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협업하여 경남청 중점지원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금융지원 추진
-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일정 한도(최대 50%)로 저리자금(연 1.00%)을 금융기관에게 지원하여 이자비용 부담 완화
 - **(지원대출기간)** 1년 이내의 운전자금대출 및 5년 이내의 시설자금대출
 - **(지원한도)** 금융기관 대출금액 기준 전략지원부문은 업체당 40억 원, 일반지원부문은 업체당 20억 원
- **(지원대상)** R&D(3개), 수출(4개), 역점지원(4개) 등 총 11개 사업 참여 기업

< 지원대상 사업 >

구 분	세 부 사 업(11개 사업)
기술개발(R&D)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②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③ 산학연 Collabo R&D사업(이하 일반지원부문)
수출	④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⑤ 수출바우처 사업 ⑥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⑦ 경남지역 수출클럽 회원사 (이하 일반지원부문)
역점사업	⑧ 경상남도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일반지원부문) ⑨ 위기장후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⑩ 「레전드50+」 경상남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⑪ 스마트공장구축사업

* **(전략지원부문)** ①「레전드50+」 경상남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②위기장후 밀집 지역 소재 기업, ③스마트공장구축사업

- **(지원기준)**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개년 이내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거나 참여 중인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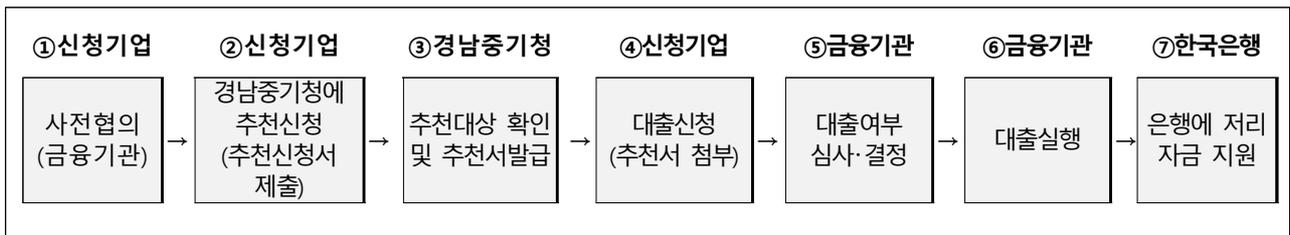
* R&D사업 참여기업은 과제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 대상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기업은 구축수준 '중간1'이상인 기업만 추천서 발급

** 단, '경상남도 중소기업대상 선정기업' 및 '경남지역 수출클럽 회원사'는 선정·참여 연도와 관계없이 지원

- **(신용등급)** 한국은행 운용기준에 따라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
* 다만, 전략지원부문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지원
- **(업종제한)** 한국은행 운용기준에 따라 일부 업종은 제외(붙임 참고)
- **(대출종류 제한)** 최종부도거래처·폐업업체·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 다른 규정 등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 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방식 대출(이차보전 대출 제외) 등은 제외

- **(지원방식)** 금융기관이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 자체 자금으로 대출하면, 한국은행은 대출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
*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심사,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

<한국은행 금융중개 지원대출 절차>



- ① **(사전 확인)**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사전에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
- ② **(추천서 신청)** 대출가능한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에서 <별지1> 서식을 작성하여 경남중기청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추천 신청
- ③ **(추천서 발급)** 경남중기청에서 신청기업에 대한 추천 조건을 확인 후 <별지2> 서식에 따라 추천서 발급
- ④ **(대출신청)**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서류와 함께 <별지2> 제출
- ⑤ **(대출실행)** 금융기관은 <별지2>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기업의 대출 여부 심사·결정하여 대출 실행

- ⑥ **(자금 지원)**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지원대상으로 최종 확정 및 금융 기관에 자금 지원
- **(신청방법)** 경남중기청 자금 담당자 메일(yupchang85@korea.kr)로 제출서류 송부
 - **(제출서류)** ① <별지1>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추천 신청서 1부
 - ② <별지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③ 중점지원사업 참여 증빙서류
- * 경남중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밀집지역](#), [중점지원사업](#)' 검색하면 공고문 확인 가능
- **(문의처)**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055-268-2594)

11 | 기업 규제·애로 상담 및 해소 지원

- **(지원내용)**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선 수시 상담 및 접수
 - 일반적인 애로사항은 유선 또는 현장방문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처(기관 등)로 규제개선 요구
- **(신청방법)** [경남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Click\)](#)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huknolza@mss.go.kr)로 제출

1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

- (사업내용)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규모) 175억원 / 일반트랙 1차(200개), 전략지원트랙(연 600개)
- (지원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
 - * 단,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 중소기업도 가능
- (지원내용)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50~70%)를 성공조건부 사후 지원(최대 1억원 한도)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지원구분	지원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세부분야별 개별한도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직접지원	최대 4건*	1억원**	70%	60%	50%	별도 존재

* 총신청금액 합계가 3,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수 제한 없음

** 의료기기 분야는 최대 1.5억원

- (지원인증) 일반트랙 1차 562개*, 전략지원트랙 9개 등**
 - * 포함되지 않는 인증도 '비공고규격'으로 신청 가능
 - **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 미국 FDA(화장품), 영국 SCPN(화장품), 수출전략품목
- (신청기간) [일반트랙] '26.1.30(금) 09:00 ~ 3.6(금) 18:00까지
[전략지원트랙] ~11월(연중상시)
- (신청방법)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smes.go.kr/globalcerti) 온라인 신청
- (문의처) 경남중기청 055-268-2541 / KTR 02-2164-0173~8

2

창원고용복지+센터

1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사업목적) 지역 우수기업, 구인애로기업 등에게 필요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고용센터 친화 분위기 확산 및 고용서비스 체감도 제고

(지원대상) 채용지원부터 고용여건 개선까지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

* ①적합한 구직자가 지원하지 않아 신속한 채용지원이 필요한 기업, ②근로조건, 작업환경 등 근무환경 컨설팅·개선지원이 필요한 기업, ③인지도가 낮아 고민인 기업, ④기타 지원제도 관련 컨설팅 희망 기업

지원유형

①기초서비스형	지역 내 우수기업으로 채용 및 지원금 상시 안내
②컨설팅형	일·육아 지원제도 설계, 장려금 지원 등 종합 컨설팅 제공
③채용연계형	채용 지원부터 종합 컨설팅까지 서비스 통합 제공

(지원기간) 지원기업 선정일부터 해당연도 종료일까지, 최대 1년

지원 단계 및 주요 서비스 내용

①진단	②종합컨설팅	③채용지원	④기초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업정보 분석 등 기업 특성 진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련 부서·기관 협업을 통한 종합 컨설팅 실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솔루션 제시, 지원사업 연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채용대행, 채용 행사, 동행면접 등 채용지원서비스 집중 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월 1회 이상 상담 실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애로사항 청취 및 주요 변동사항 등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비스 수요 발생시 연계

□ 서비스 분야

① 채용지원서비스	적합 구직자 알선, 채용행사, 동행면접, 채용대행 등
② 인사노무관리 등 경영지원	각종 고용장려금, 기업지원금, 일·가정 양립 활성화, 임금·평가체계 개선, 연계 등
③ 인프라·환경개선	유해·위험요인 개선, 산업안전시설·장비 구축비용 지원, 자동화 공정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연계 등
④ 조직문화 개선	조직문화 진단을 통한 고용문화 개선 등 일터혁신 컨설팅 연계
⑤ 맞춤형 인재 양성	현장교육 훈련, 훈련비 지원, 훈련체계 컨설팅 사업 연계 등
⑥ 인지도 제고	기업 홍보물 제작, 기업설명회·기업 현장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 신청안내

○ (신청기한)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 (온라인) QR코드 접속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에서 신청서 확인 후 유선연락



□ (문의처) 창원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전담자 ☎055-239-0964, Fax. 0503-8803-0424)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사업목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 **(지원대상)**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인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한 사업주**

□ 지원요건

- ① **(구직등록 기관 및 요건)**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

* 고용센터,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고령자 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구분	구직등록 요건 적용기준('22.7.18. 이후)
고시로 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③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연간 최대 720만원)

구분	연간 최대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 (지원주기) 1년 범위내에서 고용한 날부터 6개월 단위로 지급(월할 및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를 지원(10인 미만 3명)

□ 신청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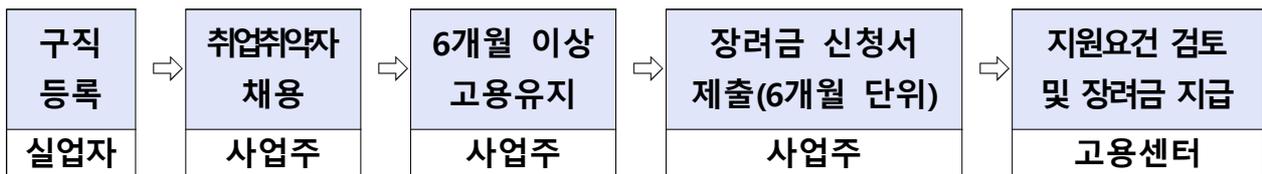
○ (신청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주기)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기업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용촉진」

□ 사업추진체계



□ (문의처) 창원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Fax.0503-8803-0424)

참 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2개월 이상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이력이 있고 구직등록 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만 35세 이상의 사람

3.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 (1)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2)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p>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p>
<p>8.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p> <p>(1)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p> <p>(2)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p>
<p>9.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50세 이상인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p>
<p>10.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을 수료한 사람</p>
<p>11. 지방관서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지방관서별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로서 고용센터의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p>
<p>12.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p>
<p>1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의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을 수료한 사람(폐업 소상공인에 한정한다)</p>
<p>14. 고용노동부 장관이 운영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에 현장실습생으로 참여한 사람. 다만, 1개월 미만 참여자는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p>

3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 (사업목적)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도모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①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②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단, 매일 1시간은 단축해야함)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 ㉣ ①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지원요건 ㉡부터 ㉤까지 모두 충족할 것
③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임신(출산 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법정임신기(12주 이내,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 중 임금삭감 금지

□ 지원내용

- (지원금액)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구분	1개월 지급액		1년 최대 지급액
	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금*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30만원	20만원	600만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30만원	× (단 30시간 이하로 단축시 지급 가능)	360만원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30만원	20만원	60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 (지원인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한도(10미만 사업장: 3명 한도)

□ 신청안내

-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기간(제척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주기) 3개월 단위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워라벨일자리(소정근로시간단축/육아기10시출근제)」

□ 사업추진체계



- (문의처) 창원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Fax.0503-8803-0424)

4 | 워라벨일자리장려금(워라벨+4.5프로젝트)

- **(사업목적)**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도입 등 실노동 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주4.5일제의 자발적 추진 확산
- **(지원대상)**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
- **(지원요건)** ①노사 합의, ②주 4.5일제 도입 계획 수립, ③출·퇴근 관리, ④ 임금 감소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
- **(지원내용)** 도입수준(전면·부분도입), 기업규모(50인 이상·미만)에 따라 지원 수준 차등, ①생명·안전 업종, ②장시간 노동 사업장, ③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④비수도권 기업 등은 선정·지원 우대(월 10만원 가산)
 -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 후, 직전 3개월 대비 평균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신규 채용 1인당 월 60~80만원 추가 지원

구분	규모별	유형별 도입 지원	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
지원 수준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 2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40만원(1년)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 60만원(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 3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50만원(1년)	
	20인 이상 ~ 50인 미만	(부분도입) 1인당 월 3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50만원(1년)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 80만원(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 4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 60만원(1년)	
지원 한도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명	노동시간 단축분에 비례해 한도 설정*
	20인 이상 ~ 50인 미만	해당 사업장 전체 규모	

▲ (전면도입) 실노동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부분도입) 실노동시간 2시간 미만 단축

- (지원한도) ①20인 이상 ~ 50인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규모, ②5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100명

-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분에 비례하여 한도를 설정*

* (실노동시간 대상 근로자 수 × 단축시간) / (40시간 - 단축시간)

- (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1년

□ 신청안내

- (신청기한)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첫 번째 주기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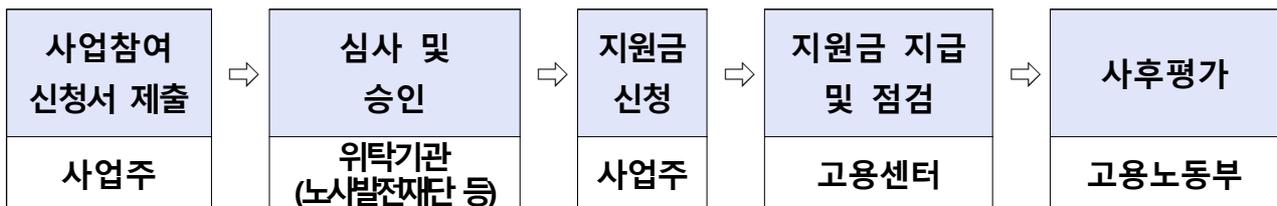
- (신청주기) 3개월 단위 신청

- 신청방법

- (사업 참여 신청)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에 제출

- (장려금 지급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사업추진체계



- (문의처) 창원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Fax.0503-8803-0424)

1 유연근무장려금

- (사업목적)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유형)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아래의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 지원요건

- (공통) ①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 심사·승인, ②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장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④전자·기계적 방식에 의한 근태관리(재택·원격은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 가능), ⑤사업계획서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유연근무 활용
- (선택근무제) ①정산기간 평균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④1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해당 월에 총 6시간 이상 단축

- (시차출퇴근) ①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 ②제도 활용 전의 출퇴근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 ③해당 월에 최소 4일 이상 활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다른 날 증가 가능), 총 단축시간이 월 6시간 이상(총 근무시간 단축과 무관)	360만원 (1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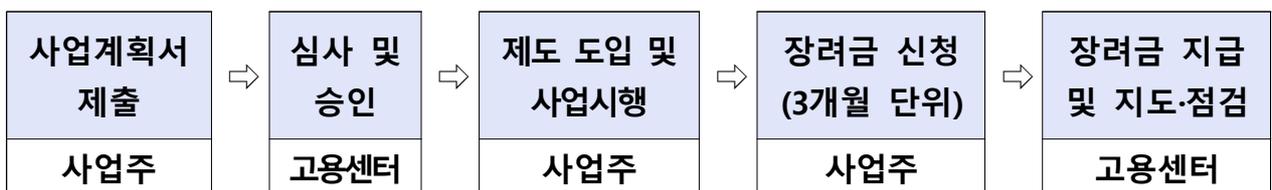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월 2배 지원

- (지원기간) 유연근무를 활용한 달부터 1년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

□ 신청안내

-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3개월 단위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접속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 사업추진체계



②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 **(사업목적)** 기업의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을 위해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 ① 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 ②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2년) 준수
 - ▲ (사용의무기간) 설치형 방식은 2년, 사용료 방식은 개별약정된 사용기간으로 최대 2년
 - ▲ (점검) 지원받은 사업장은 사용의무기간동안 고용센터의 점검에 반드시 협조
 - ③ 시스템 지원대상 품목을 목적(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모성보호·일가정양립제도)에 맞게 활용
- **(지원내용)**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를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1,000만원 한도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 한도 전액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시스템
출퇴근 및 인사 관리시스템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출입 기록 장치 등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기업 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 공유, 공동 작업 시스템 등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금 반환)** 사용의무기간 내에는 지원받은 시스템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시스템 미사용 포함), 매각, 폐업의 경우 지원금 반환 대상

□ 신청안내

- (1차 신청) 시스템 지원 계획 승인 통보일의 다음 달에 1차 지원금(승인 금액의 50% 이내) 신청 가능
 - ▲ (선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첨부
 - ▲ (사용료형 지급 대상기간) 최초 개별 약정된 사용시간이며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차 지원금)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 ▲ (일시신청) 1차 지원금을 생략하고 2차 지원금 신청시 승인된 금액 전부를 일시 신청
 - ▲ (분할신청)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투자 완료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접속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 근무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 사업추진체계



□ (문의처) 창원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Fax.0503-8803-0424)

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목적)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사업내용

① 육아휴직 지원금

-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특례* 3개월 동안 월 100만원)

*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시 첫 3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이후 월 30만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 남성휴직 1~3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구분	첫 3개월	이후 9개월	연간 지원액
기본	월 30만원		360만원
특례(적용시)	월 100만원	월 30만원	570만원
인센티브(추가지원)	월 10만원		120만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사업장 육아기 단축 1~3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 지원액
기본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추가지원)	10만원	120만원

③ 대체인력 지원금

- (대상)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30일 이상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육아휴직의 경우 대체근로자 채용일이 '25.1.1. 이후)

- * '25.1.1.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25.1.1.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만 인정)
- ** 고용시점: 육아휴직, 출산(유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내용)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26.1.1.이후 기간 단가 인상적용)

※ **인수인계기간**** (제도 사용 전 2개월+'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에도 동일 적용

* 대체인력에 대해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에 **80% 한도**

** 업무 인수인계기간: 업무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용 예정 근로자 또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와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사용)하여 사업주가 인건비를 부담한 기간

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30인 미만	140만원
	30인 이상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12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체인력의 경우, 단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인수인계기간도 동일 적용)

- (고용조정 제한)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 지급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함(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 (중복제한)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해 중복 지원 제한

④ 업무분담지원금

○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25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보상(수당 등)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업무분담자 지정: 육아지원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분담수당 증액(5명 전체)은 월 지원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내용)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지급 한도

구분	피보험자수	1개월 최대 지급액
육아휴직 업무분담	30인 미만	60만원
	30인 이상	40만원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공통	20만원

○ (중복제한) 고용보험법령 또는 다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및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 지원 및 신청기간

○ (지원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인수인계기간(출산전후휴가 등 제도 사용하기 전 2개월간 +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간*)도 지원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2026.1.1. 이후 복직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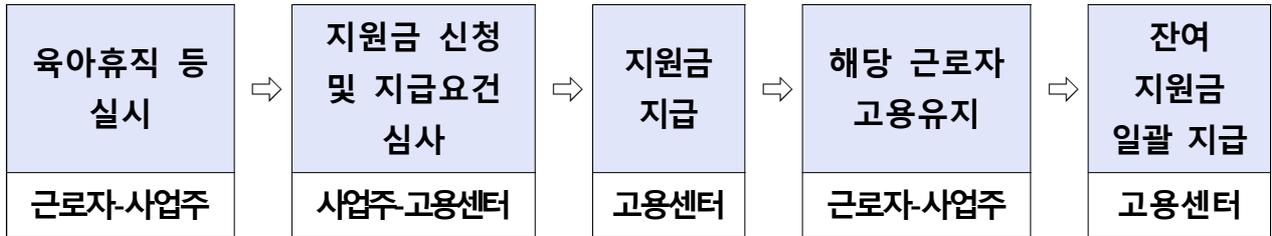
○ (신청기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 육아지원제도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주기)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구분	산정금액(100%)	
	기간 중 50%	잔여 50%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한꺼번에 신청 ※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지급 (25.7.1. 이후 허용부터 적용)
대체인력 인건비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제도 사용 기간 내 100% 지급(26.1.1. 이후 대체인력 신규고용(사용)부터 적용)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금액의 100%를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접속 「기업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출산육아기(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출산육아기(대체인력) / 출산육아기(업무분담)」

□ 사업추진체계



- (문의처) 창원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Fax.0503-8803-0424)

참 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변동 사항

장려금	구분	2025년	2026년
육아휴직	지원요건	육아휴직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특례) 첫 3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
	인센티브	(특례)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 남성 1~3호 월 10만원 추가지원	
	신청주기	(1차) 개시일 익월 3개월마다 - 30만원x3개월0.5 (2차) 복직 후 6개월 경과 시 - 30만원x총휴직월수x0.5	
	신청기한	(1차)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2차) 복직 6개월 후 12개월 * 1차 신청 이후는 소멸시효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요건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변동없음
	인센티브	사업장별 1~3호 월 10만원	
	신청주기	(1차) 개시일 익월 3개월마다 - 30만원x3개월0.5 (2차) 복직 후 6개월 경과 시 - 30만원x총사용월수x0.5	
	신청기한	(1차) 단축 종료 후 12개월 (2차) 단축 종료 6개월 후 12개월 * 1차 신청 이후는 소멸시효 3년	
대체인력	지원요건	출산(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 아기단축을 부여하고, 30일 이상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	변동없음
	인수인계 허용기간	출산육아기 제도 사용 전 2개월	출산육아기 제도 사용 전 2개월 +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신청주기	(1차) 개시일 익월 3개월마다 - 120만원x3개월*0.5 (2차) 복직 후 1개월 경과 시 - 120만원x총사용월수x0.5	개시일 익월 3개월마다 - 최대140만원x3개월 * 30인미만 사업장 : 140만원 30인이상 사업장 : 130만원 ※ 육아기단축 대체인력은 월 120만원 한도
	신청기한	(1차) 휴직 종료 후 12개월 (2차) 복직 1개월 후 12개월 * 1차 신청 이후는 소멸시효 3년	휴직 종료 후 12개월
	감원방지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 + 채용 후 1년	변동없음
업무분담	지원요건	육아휴직 또는 육아단축 주 10~25시간을 30일 이상 허용	변동없음
	신청주기	3개월 단위 신청 - 최대20만원 x 3개월 ※ 단축자 1명당 업무분담지원금 월 지원 한도 : 20만원	3개월 단위 신청 - (육휴) 최대60만원x3개월 - (단축) 최대20만원x3개월 ※ (육휴 업무분담 1인한도) - 30인이상 사업장 : 최대60만원 - 3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40만원 (단축 업무분담 1인한도) - 최대 20만원
	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2개월	변동없음

7 | 정규직 전환 지원

- **(사업목적)**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장려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

*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지원요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1회 6개월 이내 연장 가능)하고,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유지 및 처우 보장)**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고용한 이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그 외에도 ①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②고용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③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정규직 전환 시 임금 증가	지원 수준
20만원 미만	장려금 40만원
20만원 이상	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 + 장려금 40만원 → 총60만원

- **(지원·지급 기간)** 최대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급
 - 지급대상기간(전환 후 이행 기간)이 3개월보다 짧을 경우 이행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지원한도)** 전체 피보험자수*의 30%(5~10인 미만: 3인 한도)

* 최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

□ 신청안내

- (신청기한) 정규직 전환 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최초 회차 신청의 경우)
- (신청주기) 정규직 전환을 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접속 「기업 → 기업지원금 → 유
연근무 → 정규직 전환」

□ 사업추진체계



- (문의처) 창원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Fax.0503-8803-0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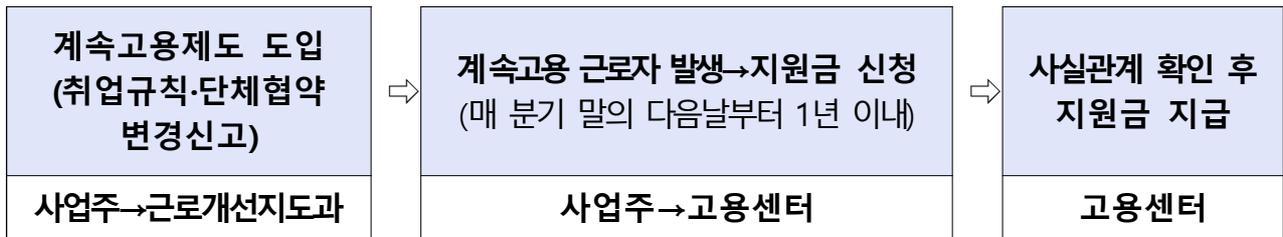
8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 **지원요건**
 - **(사업주)**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 * '1년 이상 운영'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4.1.9. 이후부터인 사업장에 적용
 - ** ①정년연장(1년 이상), ②정년폐지, ③재고용(정년의 변경없이,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자를 재고용)
 - 재고용은,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원 일률적 재고용이 원칙
 -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지원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120만원 (월 4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
 - * 해당 규정은 2026년 1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부터 적용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단가 비수도권 사업주 우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단가 인상(30만원→40만원)
 - **(지원한도)** 분기별 월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10명 미만: 3명 한도)
- **신청안내**
 - **(신청 시작일)** 분기별 신청,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 **(신청기한)**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접속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

□ 사업추진체계



- (문의처) 창원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Fax.0503-8803-0424)

9**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목적)**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 및 청년에게 장려금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

□ **지원대상**① **(기업)** 아래 요건을 충족한 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

* 단,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미래 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24, '25년 중 1개년도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1,900만원'이상인 기업

② **(청년)** 채용일 기준 실업상태인 만 15세 ~34세 청년□ **지원요건**

- ①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평균 월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등

- ②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을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대상 청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기업은 1년간, 청년은 2년간 각 최대 720만원 지원

- ① **(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②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시 최대 2년간 지원

- (일반) 6·12·18·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 (우대) 6·12·18·24개월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 (특별) 6·12·18·24개월 각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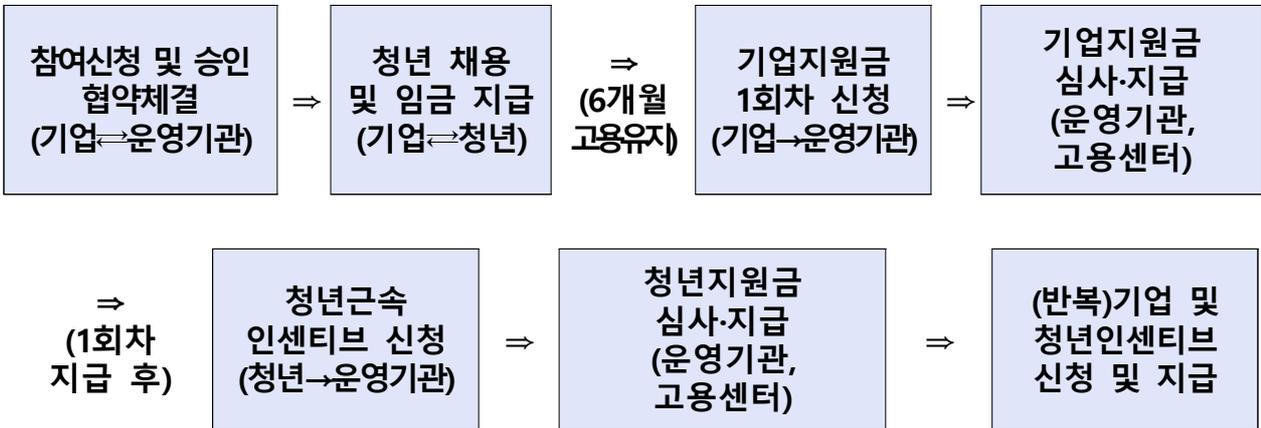
○ (지원 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 신청안내

○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운영기관	(주)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	(사)경남경영자총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연락처	055-261-3447	055-263-0283	055-281-2360

□ 사업추진체계



□ (문의처) 창원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Fax.0503-8803-0424)

□ **(사업목적)**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지원대상)** 매출액 감소* 등 일시적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거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휴업(평균임금 50%미만 수당 지급 포함) 실시 대상 근로자

* 기준달(고용유지조치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의 매출액이 그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 대비

□ 지원내용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 →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지원

○ (휴직)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 →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수준을 결정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실제 수령한 금품 등 고려하여 지원

※ 무급휴업: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 또는 50% 미만의 휴업수당)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 필요

※ 무급휴직: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수의 20% 이상의 유급휴직 중 어느 하나의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상 휴직 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 필요

□ 지원수준

○ (1일 상한액, 지원기간) 66,000원 한도, 휴업·휴직은 합하여 연간 최대 180일, 무급휴업·휴직은 재직기간 중 총 18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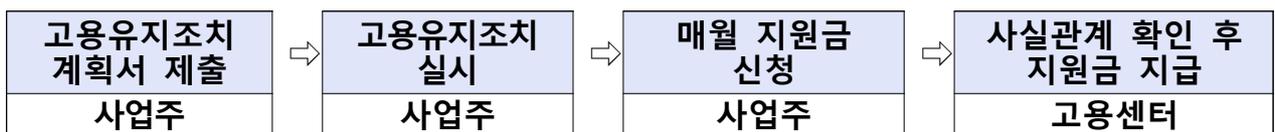
□ 신청안내

구분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매월 신고		
계획신고	달력상 월(月)에 의한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날까지 제출	1개월 단위(실제 실시한 날 기준)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날까지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30일 전까지 제출
지원금신청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 고용유지조치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휴업수당 지급 후 신청)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1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급신청을 그 후 1개월 이내(휴업수당 지급 후 신청)	1개월 단위, 고용유지조치 후 1개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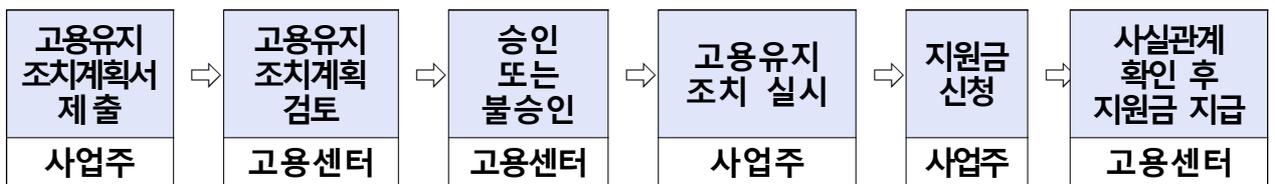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기업→기업지원금→고용유지」

□ 사업추진체계

- 휴업·휴직



- 무급휴업·휴직



- (문의처) 창원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Fax.0503-8803-0424)

3

(재)경남테크노파크**1 |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

- (사업개요)**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선박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한 기업지원
- (지원대상)**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선박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 특례지정 및 참여기업 및 기관
- (지원내용)**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책임보험	지역특구법 제88조, 제90, 동법시행령 제60조 근거, 법적 보장한도를 포함한 책임보험 가입비용 지원
실증지원	암모니아 혼소 선박의 실증 수행과 관련된 비용 지원(선원 고용, 연료 구매비 등)
시제품 제작	암모니아 실증 선박과 관련한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를 통한 암모니아 선박 및 기자재의 고도화 지원
시험인증 및 특허	암모니아 실증 선박 관련 시제품 제작품, 기자재에 대한 안전성 검증, 상용화 등을 위한 시험인증 비용지원
마케팅	<동영상 제작> 암모니아 선박 수요발굴 및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 지원
	<특허출원 지원> 암모니아 선박 관련 기자재 및 기술에 관한 PCT출원 등 IP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홈페이지 제작 및 고도화, 브로셔 제작> 암모니아 선박 수요발굴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홍보 및 광고(3d 영상물 및 모델링 등), 홍보형 모형, 브로셔 제작 등 지원
	<국내외 전시회 >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등 활동 지원

- (신청기한)** 2026. 6. 1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gntp.or.kr)
- (세부내용)**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문 보기\(Click\)](#)
- (문의처)**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본부(055-670-6632)

2**경남 디지털 혁신거점 R&BD 지원 통합 공고(디지털 기업 in 경남)**

- (사업개요)** 경남 지역 외 디지털 선도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기업 혁신 거점 내 집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경남 외 사업자(본사)로 경남 디지털 혁신 거점 내 이전을 희망하는 디지털 기업(선도기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원규모)** 15개 과제, 과제 당 10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디지털 혁신거점 내 디지털 기업 집적을 위한 R&BD 사업 지원
- (신청기한)** 2026. 3. 6.(금), 16: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gntp.or.kr)
- (세부내용)** 2026년 경상남도 디지털 혁신거점 R&BD 지원 통합 공고 (디지털 기업 in 경남) 공고문 보기(Click)
- (문의처)**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055-294-2407)

4

경남투자경제진흥원

1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 (사업개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일시적 자금난 해소 및 시설투자 증대에 기여
- (지원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
 - * 지원제외대상, 우대기업 등 상세 요건은 경남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 및 공고문 참조
- (지원규모)** 정책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0.75~2.0%)
- (지원내용)** 금융기관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경영안정자금(업체당 최대 10억 원), 시설설비자금(업체당 최대 20억 원), 특별자금(업체당 최대 50억 원) 융자승인¹⁾ 및 이차보전 지원
 - 1) 금융기관의 대출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와는 별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가 불허 또는 축소될 수 있음)
- (신청기간)** 홈페이지 및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gibamoney.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각 자금별 구비 서류 확인을 위해 공고문 필히 참조
- (세부내용)**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
- (문의처)**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055-230-2901~3)

- (사업개요) 경상남도 대표 쇼핑몰 'e경남몰' 운영
- (사업내용)
 - 온라인 시장(e커머스)의 확대 및 유통업계의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업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
 - 도내 우수상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 기회 제공
- (사업계획)
 - (입점업체 상시모집) 농·축·수·임산물 및 가공품, 지역특산물, 지역 문화체험상품 등의 제품
 - 1차 농·축·수·임산물 :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
 - 가공품 : 경상남도산 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10% 이상 함유된 제품으로 도내에서 생산한 제품
 - (홍보·마케팅 활성화) 각종 행사 및 홍보 마케팅(월별 기획전, 특판전 등)을 통하여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온라인 판로 개척을 본격적으로 지원
- (세부내용) e경남몰 홈페이지
 - ※ 입점관련 : e경남몰 홈페이지→우측 상단 입점안내→입점신청 게시판
- (문의처)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055-230-2906)

3**소비재 수출 초보기업 O2O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개요)** 제조업에 비해 수출 시장이 좁은 소비재 기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자 함
- (지원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소비재 생산기업
- (사업내용)**
 - 도내 중소기업 중 소비재 생산기업을 선정하여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상세 자격요건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고문(상반기 중) 참조
 - 온라인 해외마케팅 및 오프라인 해외 전시회 참가를 병행하여 지원
 - (온 라 인) 온라인 플랫폼 등록을 위한 콘텐츠 제작, 수출 컨설팅, 해외 마케팅 정보 제공 등을 통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마케팅 등
 - (오프라인) 선정업체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추후 공지 예정)
- (세부내용)** 2026년 상반기 중 공고 예정
- (문 의 처)**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055-230-2908)

4**양산시 소비재 수출 초보기업 020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개요)** 양산시 소재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바이어 발굴을 위해 온·오프라인 연계하여 해외 전시회를 참가지원하는 사업
- (사업내용)**
 - 양산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대상
※ 상세 자격요건, 지원제한 업체 등 경남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조
 - 해외 전시회 부스 임차료, 통역료, 편도 항공료 등 지원
 - 바이어 매칭, 베트남 현지 인플루언서 라이브방송 등 지원
- (모집기간)** 2026년 상반기 중 공고 예정
- (문의처)**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055-230-2908)

5**경남 모범장수기업 지원사업**

- (사업개요)** 도내에서 오랜 기간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 증대, ESG경영 등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며 경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남 모범장수기업을 인증 및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도내 소재 업력 30년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
* 지원제외대상 등 상세 요건은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공고문 참조
- (모집기간)** 2026년 2월 중 공고예정
- (사업내용)**
 - 경남 모범장수기업 인증패 및 인증서 교부
 - 시설 및 환경개선비용(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문의처)**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055-230-2904)

6**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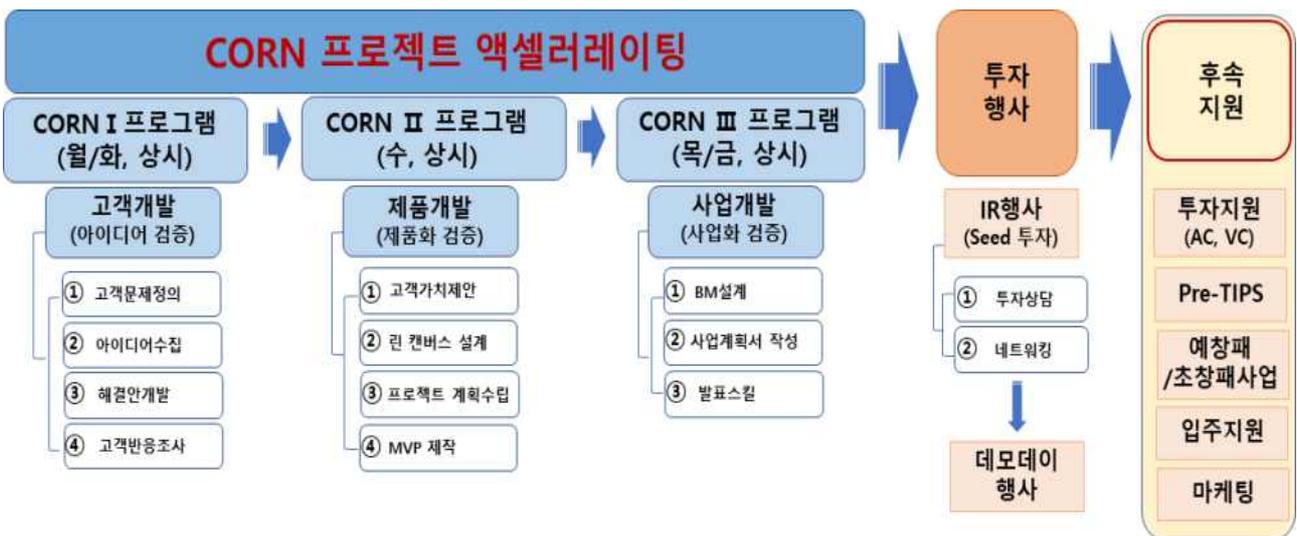
- (사업개요)** 도내 소재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신규시장 판로 개척 및 제품 홍보 등을 위한 국내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 (사업내용)**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중인 중소제조기업 대상
 - ※ 상세 자격요건, 지원제한 업체 등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조
 - 선정업체 국내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시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지원 (업체당 3백만원 한도 내, 참가비의 80% 지원)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를 통한 도내 우수상품의 판로 확대 기회 제공
- (세부내용)** 2026년 상반기 중 공고 예정
- (문의처)**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055-230-2901)

7**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 (사업개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기업 체감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도내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내용)**
 - 도내 중소기업 1개사 이상(수탁기업)과 거래하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 대상(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실적을 확인하여, 실적 우수 기업 대상으로 인센티브(환경개선 지원, 시제품 개발 등) 지원
 - 최대 3개사 지원
- (세부내용)** 2026년 2~3월 중 공고 예정
- (문의처)**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055-230-2901)

1 2026년 CORN 프로젝트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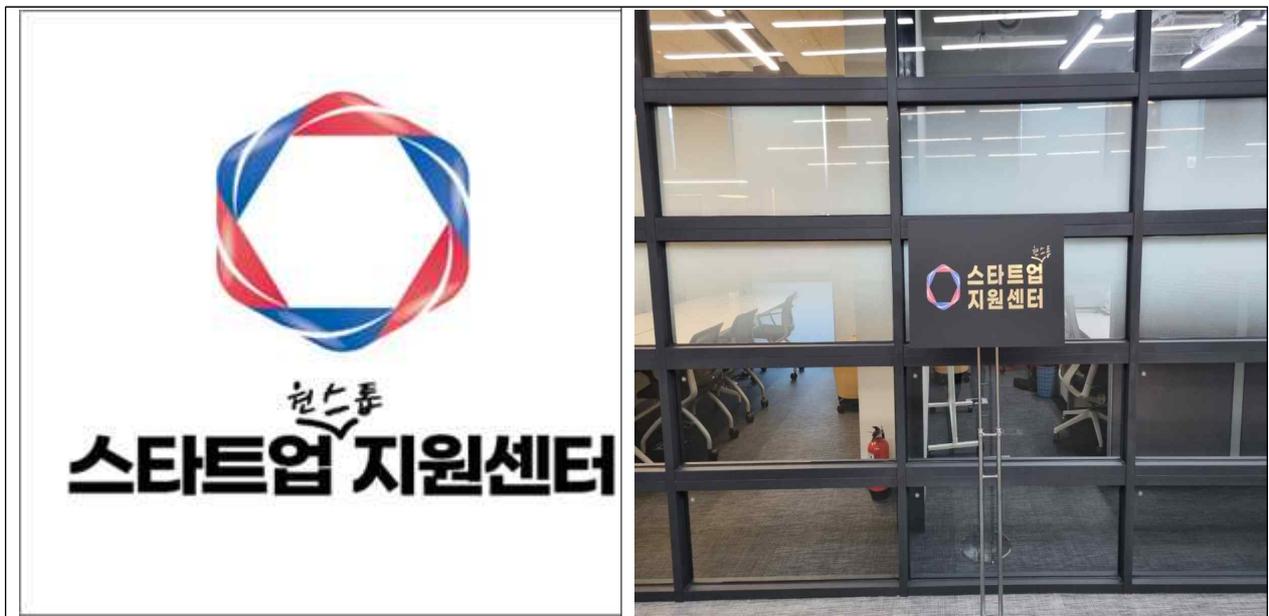
- (사업목적) 창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 (모집대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지원혜택) 아이디어 검증, 전문가 멘토링, 투자행사 참여 등
- (지원내용) 아이디어 사업화 검증, 제품 및 사업개발 창업역량강화
 - CORN I 프로젝트 : 고객개발(아이디어 검증)
 - CORN II 프로젝트 : 제품개발(최소기능제품 확인)
 - CORN III 프로젝트 : 사업개발(사업화 검증)
- (신청기한) 2026. 1. ~ 12. (※기간 내 상시 모집)
- (운영절차)



- (세부내용) CORN 프로젝트 홈페이지 참조 ☞ www.kcorn.kr
- (문의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액셀러레이션본부 (☎055-291-9314)
- (참고사항) 기관·기업·학교 등에서 요청 시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CORN 프로젝트” 운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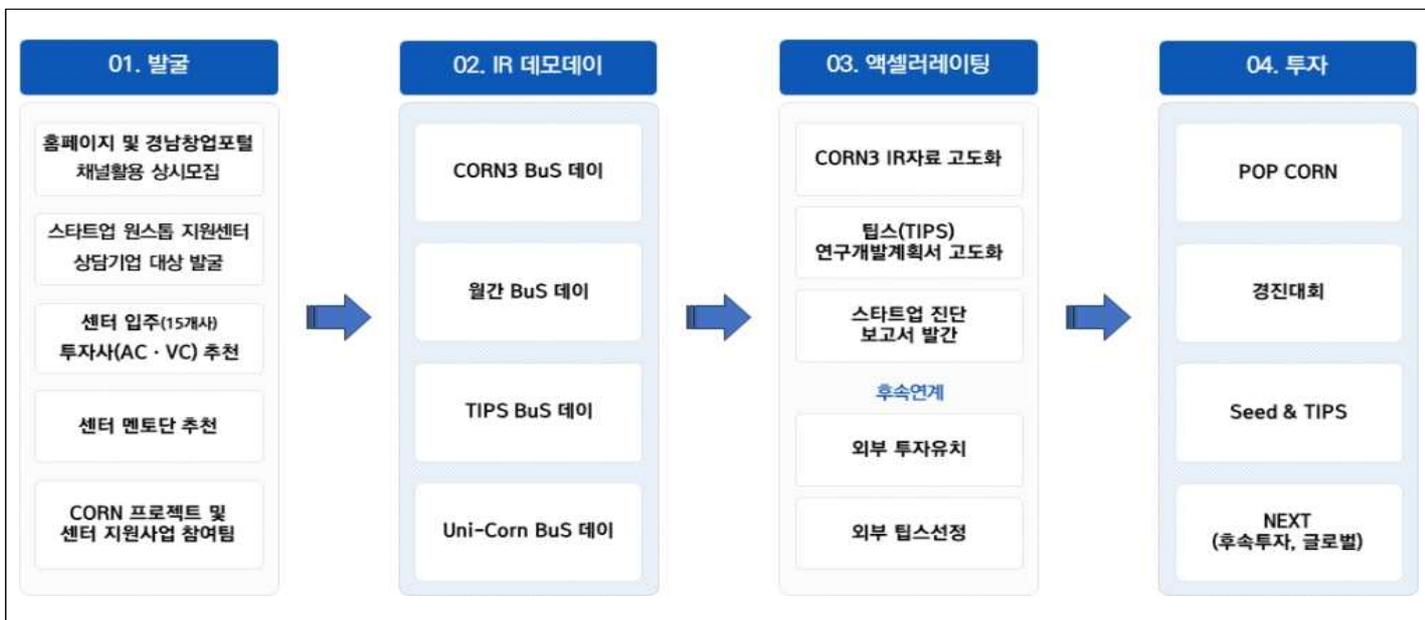
2 | 경남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사업

- (운영기간) 2026. 1. 2.(금)~12.31. 09:00~18:00 공휴일 휴무
(상시운영)
- (운영장소) 경남스타트업원스톱지원센터(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2층)
- (주요기능) (예비)창업자 대상 정부 창업 지원 사업 정보 및 전문
상담 지원
(법무, 세무, 특허, 노무 등 창업과정에 필요한 전문상
담)



- (문의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본부 (☎055-291-9376)

- (사업목적)** 연중상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액셀러레이팅을 통한 투자유치
- (모집대상)** 7년이내 스타트업
- (지원혜택)** IR, 멘토링, 자료고도화 시상 전략보고서 제공 등
- (지원내용)** 스타트업 사전진단 및 분석, 교육제공, 시장분석/ 전략 보고서 지원 등
- (사업기간)** 26.01.01. ~ 12.31.
- (추진내용)**



- (문의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거점본부 (☎055-291-9367)

6**경남신용보증재단****1****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특별보증**

- (사업개요)**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자금과 연계한 보증 지원을 통해 도내 소기업 등의 금융부담 완화 및 성장지원 도모
- (지원대상)** 경상남도에서 제조업을 영위 중인 소기업 등
- (지원규모)** 300억원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본 건 3억원 이내(최소 대출금액 50백만원 이상)
 - 보증기간 : 1년 이내 (1년 단위 연장가능)
- (신청기한)** 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gnsinbo.or.kr/>) 접속 후 보증상담예약
-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

2**경남형 강한 중소기업 성장지원 특별보증**

- (사업개요)** 코로나 이후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도내 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보증을 통한 유동성공급으로 금융부담 완화 및 성장지원 도모
- (지원대상)**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업력 1년이상으로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소기업 등
 -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
 - ② 기업신용등급 B등급 이상
- (보증한도)** 본 건 3억원 이내
 - * 같은 기업당 총보증금액 (본건, 재단 기보증,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8억원 이내
- (신청기한)** 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gnsinbo.or.kr/>) 접속 후 보증상담예약
-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

3 장수기업 소상공인 특별보증

- (사업개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①대표자 신용평점이 780점 이상이고, ②업력 7년 이상(또는 2,555일 이상)의 장수기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본 건 1억원 이내
 - 보증기간 : 7년 이내(1년 단위 연장가능)
- (신청기한) 2024. 7. 1.(월) ~ 별도 통지시까지
-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gnsinbo.or.kr/>) 접속 후 보증상담예약
-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

4 성실상환기업 THE DREAM 특별보증

- (사업개요) 재단 보증부 대출을 성실히 상환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으로 사업안정성 도모
- (지원대상)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대표자 신용평점이 780점 이상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① 재단 보증을 분할상환으로 이용 중이며, 보증부대출의 원금을 최소 1년이상 또는 대출금액기준 20%이상 상환한 업체
 - ② 재단 보증부 대출을 전액상환 후 재단 보증잔액이 없는 업체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본 건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7년 이내 (1년 단위 연장가능)
- (신청기한) 2024년 10. 8.(화) ~ 별도 통지시까지
-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gnsinbo.or.kr/>) 접속 후 보증상담예약
-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

5 |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 (사업개요) 코로나피해 소상공인의 기존대출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저리의 분할상환 보증부 대출로 전환
- (지원대상) '20.4.~'25.6월중 사업을 영위하고, 동기간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이용 기업으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20~'23년 중 연도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 감소한 기업
 - ② '20~'23년 중 발생한 채무(지원대상 채무 제외) 2건 이상 보유 기업
 - ③ 접수일 기준 중·저신용자(舊 4등급(NICE 839점) 이하)인 기업
 - ④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용평점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본건 1억원 이내(전차보증의 보증잔액 범위 내)
 - 보증기간 : 7년 이내
- (신청기한) 2025년 7. 30.(수) ~ 별도 통지시까지
-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gnsinbo.or.kr>) 접속 후 보증상담예약
-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

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

1

2026년 1~2월 직무역량향상연수 과정 안내

- (사업개요)** 중소기업 CEO 및 재직자의 신기술, 현장실무능력 등 전문 역량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재를 육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임직원
- (지원내용)** 기술, 정책분야 등 다양한 교육영역, 교육방식의 연수과정 제공

【 '26년 1~2월 직무역량향상연수(집합연수) 일정 】

구분	과 정 명	연수비	기 간
경영	원가계산실무	330,000원	2/25~27
품질	품질의 핵심! 4M 관리 실무	242,000원	2/5~6
디지털 신산업 및 생산 기술	회로 설계와 진단 실습	253,000	1/29~30
	AI 도입을 위한 데이터 준비 시뮬레이션	253,000	1/29~30
	스마트공장 공정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트윈	무료	2/2~4
	SMART! Excel 실무	341,000	2/4~6
	OpenCV 기반 불량검출 AI 모델링 및 성능검증	253,000	2/9~10
	AI로 시작하는 영업마케팅 : 업무시간을 단축하는 영업마케팅 담당자의 비밀	253,000	2/26~27

【 '26년 1~2월 직무역량향상연수(웨비나-실시간 온라인연수) 일정 】

과정명	세부내용	일정
생성형 AI 톺아보기 : 하루만에 둘러보는 업무혁신 AI	- 생성형 AI 원리와 구성요소, 기초적인 생성형 AI 이론 이해 - Chat GPT와 전력 문서 자동화 - Claude 데이터 분석 - Gemini와 미디어 생성	2026.2.6.(금) 10:00~17:00
스마트공장 CEO 임원 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과정	- 스마트공장 산업 및 최신 기술 이해 - 스마트공장 운영을 위한 CEO 리더십 배양	2026.2.12.(목) 13:00~17:00

- (신청방법)** 중소기업연수원 홈페이지 (<https://ssup.kosmes.or.kr>) 온라인 신청
- (할인제도)** 연수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적용대상 및 절차	할인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2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수도권이외지역)	30~50
신규과정	30
내일채움가입자, 인재육성형 기업, 여성기업 등 정책연계	30~50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협약기간 내)	30~50

- * CEO명품아카데미 과정은 할인가준 적용에서 제외
- * 연수비 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세부내용) [중소기업연수원 홈페이지\(Click\)](#)

(문 의 처) 부산경남연수원 신기술연수팀(055-548-80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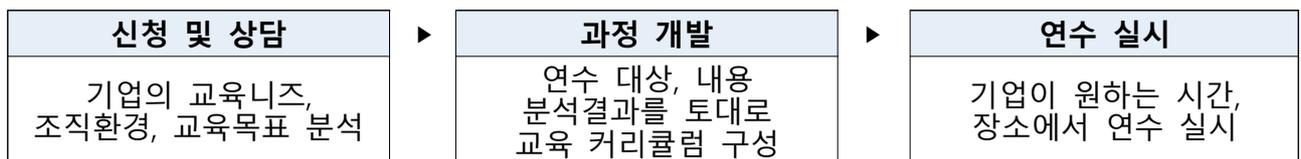
2 | 기업 맞춤형 연수 안내

(연수개요) 기업의 니즈 및 현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하여 기업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진행되는 기업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연수특징)

- 기업니즈, 현장기술 및 경영애로 등을 진단하여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기업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어 업무공백이 적고 보다 편리함
- 과정 설계부터 교육운영까지 전 과정을 연수원이 책임지므로 기업의 부담 최소화
- 다양한 교육 분야와 연수 과정을 폭넓게 선택하여 운영 가능

(신청절차)



(문 의 처) 부산경남연수원 신기술연수팀(055-548-8026)

3 K-기업가정신센터 안내

- (추진목적)**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정신으로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혁신적인 기업가를 양성
- (교육주제)**

구분	모듈명	세부내용	시간(h)
필수	K-기업가정신의 사상적 배경	기업가정신의 이해(글로벌 기업인 사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사례(1세대 중심) 나만의 기업가정신 정립	1~2
	현장체험(진주)	센터 전시관 및 승산마을(해설사 동행)	
선택	기업가적 내면성찰	자아성찰 및 명상체험	
	기업가적 비전설계	자신과 기업의 가치체계 재정립	
	조직문화와 리더십	리더십 유형파악 공감할 수 있는 문화만들기	
	고객경험 설계	고객의 변화와 트렌드 이해 고객여정지도를 활용한 경험설계	
	문제해결력 향상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이란? 문제해결 프로세스	
	비즈니스모델 수립	비즈니스모델 개념 비즈니스모델의 프레임워크	
	업종별 ESG전략	ESG, 정의부터 제대로 ESG경영 실천전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추진전략 및 접근방안 : 디자인싱킹 방법론	
	남명특강	남명조식의 경의사상과 K-기업가정신	
	현장체험(산청)	남명기념관, 전시관, 산천재 체험	
지역특화산업 맞춤형과정	지역특화산업 맞춤형과정	항공우주산업 발전방향 및 전략	2~3
		천연/재생섬유 동향 및 사업화 현황	
		바이오기술 특허와 및 창업	
		방위력개선 및 국방 R&D사업 교육	
기업성장단계 맞춤형과정	지속가능 기업의 성장단계별 점검항목		
차세대기업인 맞춤형과정	가업승계와 리더십		

- (교육시간)** 1일(5h), 1일(7h) 또는 1박 2일(12h)
- (교육장소)** 2026. 03. ~ 2026. 11. / K-기업가정신센터(진주*) 등
* 경남 진주시 지수면 지수로 482
- (연수비용)** 무료(숙박비, 버스 임차비 미지원)
- (연수대상)** 창업·중소 CEO, 재직자, 예비창업자 등 협단체, 기업
- (문의처)** 부산경남연수원 신기술연수팀(055-548-8023)

4 부산경남연수원 시설 대관 안내

□ (대관 개요) 워크숍, 창립식 등 행사진행 시 활용 가능한 숙박시설, 강의시설, 편의시설 민간 개방

□ (이용가능 시설)

시설 구분	개방 시설	수용인원	사용료
강의시설	강의실	15~50명	기본 3시간 : 10만원 추가 1시간당 : 2만원
	대강당	120명	기본 3시간 : 30만원 추가 1시간당 : 6만원
숙박시설	기숙사	2인실(55개)	4만원
		단체실(5인 내외, 2개)	10만원
기타 편의시설	실내체육관, 식당 등		별도문의



강의실



대강당



기숙사



실내체육관

□ (문의처) 부산경남연수원 시설대여 담당자(055-548-8022)

8

기술보증기금 부울경지역본부

1

2026년 기술보증기금 중점 지원분야

구 분	대상기업 등
기술선도 산업지원 프로그램 (2월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우대프로그램을 개편 - 정부 추진 6대 핵심성장동력 산업(AI, Bio, Contents & Culture, Defense, Energy, Factory) 및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집중지원
스케일업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후 3년초과 기업으로 최근 3회계년도 중 2개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이며,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이고, 기술사업성장등급 G6등급 이상인 기업
AI·AX경쟁력강화 우대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 하는 기업 - 제조·서비스 분야에 AI를 도입·활용하여 생산성 향상, 공정과정 개선, 부가가치 창출 등 기술혁신 추진 기업
안전인프라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취약·우수·산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 안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재난안전혁신 우수기업 등 보증지원
청년창업기업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경영자가 모두 만 17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후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해외진출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종속기업을 보유(예정 포함)하고 있는 국내지배기업이 외화증권취득, 외화대부채권취득 등 해외직접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현지금융기관을 통한 해외종속기업의 원활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국내 지배기업의 의뢰로 발행하는 금융회사의 보증신용장에 대한 지급보증의보증

- (우대사항)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료 감면, 금리(금융기관 협약 상품일 경우) 등 우대

9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

1

신속위기대응 특례보증

□ 개요

○ 경제 여건 변화, 재난 등 각종 위기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보증 프로그램 마련

-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심사를 완화하고, 일반·긴급 위기 상황에 따라 보증한도·보증료율 등 우대사항을 차등 적용

◆ 금융위원회 「위기대응 특례보증 운용지침」('25. 5. 12.)

- 지원대상: 관세조치·산업위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총량한도: 3조원
- 동 업무 취급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서 정하는 면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

□ 특례보증 프로그램 : 관세조치·산업위기·재난 피해기업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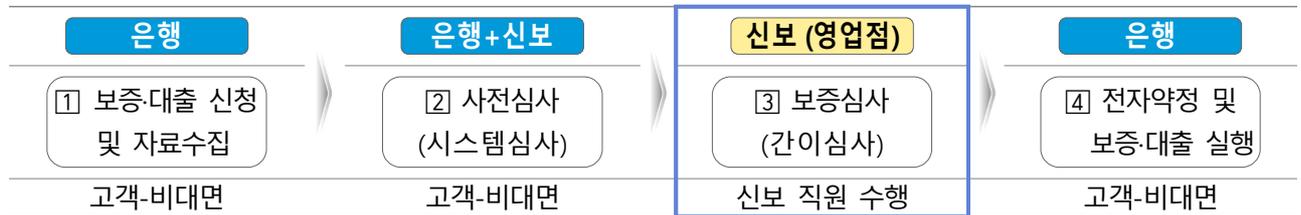
< 특례보증 프로그램 내용 >

구 분	① 관세조치 피해기업	② 산업위기 피해기업	③ 재난 피해기업
위기상황	긴급 위기 상황	일반 위기 상황	일반 위기 상황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수출·입 실적 보유 • 수출·입 실적 감소 • 관세 피해 업종 영위 • 매출액, 고용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주된사업 영위 협력기업 * '25.8월 현재 (전남) 여수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사업 영위 협력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 * '25.8월 현재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울산) 울주
보증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 5억원 • (시설) 소요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 3억원 • (시설) 소요자금 	
보증비율	90%		
심사방법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일반심사, 영업점장 전결 적용		
보증료율	0.5%p 차감 * 상한 1.0%	0.3%p 차감	
취급조직	영업본부 (영업본부 소속 팀, 센터), 영업점 (스타트업지점 포함)		

2 Easy-One 보증

- 비대면 플랫폼(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활용해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서류준비 없이도 정책금융 이용 가능
 - 신용보증기금 On-Biz, 기업은행(I-ONE Bank(기업용)),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신한은행(신한 SOL뱅크), 토스뱅크(토스)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보증 신청
 - 기업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대상 확인, 정보 활용동의, 온라인 자료제출 등을 통해 보증신청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

☞ 「은행 연계 Easy-One 보증」 업무처리절차 요약



- 보증운용방법
 - (대상기업)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대표자 2명 이상인 기업 제외)
 - 사업개시일로부터 보증신청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
 - 관계기업이 없는 기업
 - * 관계기업이 신보·기보·재단의 보증 미이용 기업일 경우는 가능
 - (대상채무) 운전자금 대출
 - (대상채무) 1억원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1588-6565)

- (사업개요)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시설자금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을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정책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 자금별 상이
- (신청기한) '26.1.5.(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온라인 접수
- (세부내용) [소상공인정책자금 정책자금 한눈에보기](#) 및 [공지사항](#)

구분	내용	한도	기간(거차)	금리
일반 경영 안정 자금	업력무관	7천만원	5년(2년)	3.56% 변동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1분기 마감)	1억원	7년(2년)	2% 고정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재해]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1억원	5년(2년)	2% 고정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매출감소 15% 확인)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연도반기분기월별 비교를 통해 매출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매출감소 확인 예외) ①~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대출한도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7천만원	5년(2년)	2.96% 변동
청년 고용 연계 자금	신청일 기준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전체근로자 중 50% 이상 청년고용기업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기업	7천만원	5년(2년)	2.96% 변동

소공인 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공인	(운전) 1억원	5년(2년)	3.56% 변동
		(시설) 5억원	8년(3년)	
대환대출	'25.6.30. 이전에 받은 대출(사업자대출, 사업용도 가계대출) 중에서 고금리 대출(7% 이상)이거나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 ※ 대출한도 :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5천만원	10년 (0 또는 2년)	4.50% 고정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2 |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1분기 접수 개시

- (사업개요)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시설자금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정책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 자금별 상이
- (신청기한) '26.1.1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온라인 접수
- (세부내용) [소상공인정책자금 정책자금 한눈에보기](#) 및 [공지사항](#)

구분	내용	한도	기간	금리
혁신성장 촉진자금	[혁신형] ①수출, ②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③스마트공장 도입, ④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⑤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⑥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운전) 2억원	5년(2년)	3.36% 변동
		(시설) 10억원	8년(3년)	
	[일반형] ①스마트기술, ②백년소공인·백년가게, ③사회적경제기업, ④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운전) 1억원	5년(2년)	3.36% 변동
		(시설) 5억원	8년(3년)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소진공에서 지정된 전문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 지원받고, 선투자 추천서 받은 소상공인	5억원	8년(3년)	3.36% 변동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 (26.1.19~)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한도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 합산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3천만원	5년(2년)	4.56% 변동
긴급경영 안정자금	대대대출요건 동일하나 연대출 1억 4천만원 미만면서 업력 7년 미만의 경우	(재해) 7천만원	5년(2년)	2% 고정
		(일시적) 7천만원	5년(2년)	2.96% 변동
재도전 특별자금	<p>[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 25h 이상 수료</p> <p>[희망형] '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 '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 단, 채무조정 중인 경우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p> <p>[도약형] ①~③를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재창업(1개 이상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창업 기업의 업력이 2년 이상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 전환 또는 매출 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 <p>② 성장(1개 이상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대비 또는 최근 2분기 이상 매출액이 5% 이상 증가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2인 이상 <p>③ 성실상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대출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div> ※ 대출한도 :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7천만원		4.56% 변동
		1억원		3.56% 변동
		2억원	5년(2년)	3.36% 변동
상생성장 지원자금	<p>[일반형] '25~'26 TOPS 프로그램 1단계에 선정된 소상공인</p> <p>[성장형] 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추천을 받은 성장 소상공인, '25~'26년 TOPS 2단계 선정 소상공인</p> <p>[도약형] '26 POST-TOPS 프로그램 선정된 소상공인</p>	7천만원	5년(2년)	
		(운전) 1억원	5년(2년)	
		(시설) 5억원	8년(3년)	3.36% 변동
		(운전) 2억원	5년(2년)	
		(시설) 10억원	8년(3년)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3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사업

- **(사업개요)**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이후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또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경영애로 사유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분할상환 특례 지원*(상환연장 최대 7년 + 1%p 금리감면) 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최대 7년)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경영애로 사유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신청기간)** '25. 7. 30.(수) ~ '26. 6. 30.(화)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 분할상환 특례 지원: '26. 6. 30.까지 신청 가능
 - **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속 운영('25. 6. 30.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 방문 :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 (선정절차)



- **(세부내용)** [코로나19피해 분할 상환 특례 지원 공고 보기](#)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11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동 자료는 무역보험 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완전성 및 법률적 책임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아니므로 개별사안에 대한 K-SURE 앞 구체적 문의 없이, 이 자료의 내용만을 적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

- (사업개요)**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신청자격)** 수출 중소기업
- (지원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 및 기타 수출자금 등을 대출 받을 때 공사가 수출기업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금융기관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
- (신청기한)** 연중 상시 지원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2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 Plus+) 제도

- (사업개요)**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지급 등으로 수출자가 입은 손실을 공사가 보상함으로써, 수출자의 신시장 개척 등 적극적인 수출을 지원
- (신청자격)** 연간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수출자가 보험계약기간 중 이행(선적)한 수출거래에 대하여,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및 수출클레임 위험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 공사가 연간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
 - 수입자 신용조사, 수출건별 통지 등의 절차 생략으로 제도 이용이 간편
- (신청기한)** 연중 상시 지원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3

환변동보험 제도

- (사업개요)** 수출·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헤지
- (신청자격)** 수출 및 수입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제도특징)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3년 6개월까지 환리스크 헤지 가능
 - (대상통화) USD, JPY, EUR, CNY
 - (보험한도) 수출입실적, 기업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보험 한도 책정

【 환변동보험의 종류 】

구 분		세 부 내 용
일반형 선물환	수출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하락 : 공사→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 환율상승 : 보험계약자→공사에 이익금 납부
	원자재수입거래 (수출원자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상승 : 공사→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 환율하락 : 보험계약자→공사에 이익금 납부
옵션형 (이익금 납부 의무 없음)	부분보장 옵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하락 : 통화당* 80원까지 보험금 지급 ■ 환율상승 : 이익금 납부 면제 <p>* JPY는 100엔당</p>
	완전보장 옵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하락 : 환차손 전액 보험금 지급 ■ 환율상승 : 이익금 납부 면제

- (신청기한)** 연중 상시 지원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4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제도

- (사업개요)** 수출자가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 외환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금융기관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
- (신청자격)** 수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제도특징) 1개의 보증서로 다수 수입자와의 거래 모두 담보
 - (보증대상)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대상거래) 수입자와의 대출기간 180일 이내 무신용장 일반수출거래
 - (보증한도) 최대 U\$700만(U\$10만 이내 책정 시 간편 심사)
 - * 휴·폐업 기업, 세금·4대 보험료·금융기관 등 연체기업, 신용등급 불량 기업 등은 보증한도 책정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한)** 연중 상시 지원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5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제도

- **(사업개요)** 수출 초보 중소기업이 은행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전용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연대보증을 제공
- **(신청자격)** 한국평가데이터(KoDATA) 등급 B+이상 기업 중 매출액 1억원 초과 100억원 미만 및 전년도 수출실적 U\$1만 이상 U\$200만 미만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제도특징) 은행 플랫폼 및 대외정보연계망 활용을 통한 보증심사 자동화
 - (지원종목)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보증한도) 5천만원 또는 1억원(KoDATA등급이 BB+이상인 경우 1억원 가능)
 - (취급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 (상환방식) 2년 거치 2년 상환(신한은행·토스뱅크), 1년 거치 3년 상환(하나은행)
* 휴·폐업 기업, 세금·4대 보험료·금융기관 등 연체기업, 신용등급 불량 기업 등은 보증 한도 책정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한)** 연중 상시 지원
- **(신청방법)** 은행별 모바일앱(신한 SOL-biz·토스뱅크), 웹사이트(하나은행 기업)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6**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 (사업개요)**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공사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제공
- (신청자격)** 해외 미수채권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
- (지원내용)**
 - 공사(K-sure)의 23개 해외조직망, 40개국 110여개 현지 추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채권 회수 컨설팅 및 회수대행 서비스 제공
 - 회수대행 수수료는 회수금 발생시 부과(성공불)하며,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는 무료
- (신청기한)** 연중 상시 지원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미부보채권팀 문의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

7**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 (사업개요)**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무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 (신청자격)** 연간 수출실적 U\$1천만 미만의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각 분야*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가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기업당 6회 한도)
 - * 금융, 수출입, 관세, 법무, 회계(세무), 인사(노무), ESG
 - 컨설팅 방법 : 방문(컨설턴트가 업체 방문), 유선, 이메일, 화상회의
- (신청기한)** 연중 상시 지원
- (신청방법)** Trade-Sure 컨설팅 홈페이지(tradesure.ksure.or.kr)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

- (사업개요)** 지자체 지원을 통해 수출보험을 이용하는 수출 중소기업에게 수출보험료(보증료)를 지원
- (신청자격)** 경남지역 내 본사 또는 지사(공장)을 두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보험료 지원사업) 지자체 지원을 통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보험료(보증료)를 지원
 - (단체보험 운영)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해 최대 U\$5만 이내에서 보상
- (신청기한)**
 - 연중 상시 지원(예산 소진시 까지)
 - * 보험료 지원예산 및 단체보험 보상한도는 지자체별로 상이함
 - ** 당해 연도 보험료지원사업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참고 | 무역보험 제도 전반

운영제도 개요

-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계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수입보험)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자의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금융기관의 국내 수입자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기타)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환변동보험,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등

주요 지원제도 개요

주요 종목		주요 내용
단기성보험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손실 발생시 보상(결제기간 2년 이내)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Plus+)	▪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손실 발생시 보상(결제기간 1년 이내)
	수입보험 (글로벌공급망)	▪ 자원 수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 후 대출금 미회수 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수출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 중소·중견기업이 선적 이전 물품을 제조, 가공,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으로부터 수출이행자금 대출 시 보증 지원
	수출신용보증 (포괄매입)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수입자 제한 없음)
환변동보험		▪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지급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헷지 지원

- (거래단계별 지원 체계)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조사부터 수출대금 회수까지 전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수출단계	수출자·금융기관 노출위험/문제	K-SURE 지원제도
수출상담 및 수출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한 수입국 사정 및 수입자 신용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국 정보 제공 ▪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		
수출 이행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및 완제품 조달, 수출물품 생산 등 수출이행을 위한 자금조달 문제 ▪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환변동보험
↓		
선적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후 수입자로부터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중소기업Plus+, 단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상 수출거래 시, 대금결제기간 동안의 자금부족 등 유동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시점과 결제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한 환차손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변동보험
↓		
손실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채권 미회수로 인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미가입건에 대한 채권추심대행 서비스

12 중소기업중앙회

1 지역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일 시) '26. 3. 4(수)
- (장 소) 창원컨벤션센터 회의실
- (내 용) 노란우산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055-281-2305)

1 글로벌IP스타기업 지원사업

- (사업개요)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6년 수출 예정인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IP(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규모) 경남지식재산센터에서 컨설팅 이후 지원 한도 결정
-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분담금 제외금액)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특허(개별국)		2,520~5,700천원 이내	
상 표		2,100천원 이내	
디자인		2,400천원 이내	
해외OA· 등록 지원	OA비용 등록비용	해당 국가에 따라	780~2,460천원 이내
			1,200~3,180천원 이내
특허	특허맵(해외)		18,000천원 이내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9,000천원 이내
디자인	디자인맵(해외)		18,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개발		16,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목업		6,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 개발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		6,000천원~9,000천원 이내
브랜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27,000천원 이내
	신규브랜드 개발		14,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 개발		6,000천원 이내
기타	특허&디자인 컨버전스		33,000천원 이내
	브랜드&디자인 컨버전스		24,000천원 이내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13,000천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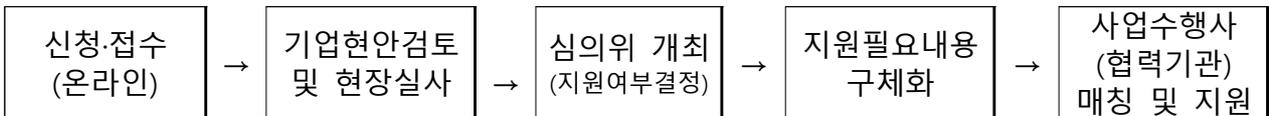
- (신청기한) 2026년 1월 12일(월) ~ 2월 19일(목)
- (신청방법) RIPC 사업관리 시스템(www.pms.ripc.org)
- (세부내용) [2026년도 글로벌IP스타기업 신청 시스템\(Click\)](#)
- (문의처) 경남지식재산센터(055-210-3088)

2 중소기업 지식재산 긴급지원

-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해결·상담해 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지원규모) 기업 당 2,0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중소기업 IP 긴급지원	출원 비용지원	국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해외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2,100~5,700천원 이내
특허			특허맵(국내)	9,000천원 이내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9,000천원 이내
디자인			디자인맵(국내)	9,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개발	16,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목업	6,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 개발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	6,000천원~9,000천원 이내
브랜드			신규브랜드 개발	14,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 개발	6,000천원 이내	

-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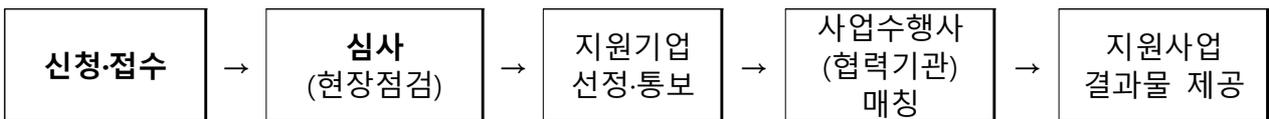
- (신청기한) 2025년 2월 중
- (신청방법) RIPC 사업관리 시스템(www.pms.ripic.org)
- (세부내용) 2026년도 중소기업IP긴급지원 신청 시스템(Click)
- (문의처) 경남지식재산센터(055-210-3087)

3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 (사업개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생존력 제고
- (지원대상)** 기술을 보유한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신사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기업
- (지원규모)** 기업당 1건
- (지원내용)**

IP나래 (맞춤형 IP컨설팅)		
[[IP 기술전략] 유망기술 도출 IP 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IP 경영전략] IP 인프라·조직 구축 IP 자산구축 IP 사업화 전략 IP 브랜드·디자인 경영	17,500천원 이내

- (선정절차)**



- (신청기한)** 2026년 2월 4일(수) ~ 3월 4(수)(2차 공고 5월 예정)
- (신청방법)** RIPC 사업관리 시스템(www.pms.ripc.org)
- (세부내용)** 2026년도 IP나래프로그램 신청 시스템(Click)
- (문의처)** 경남지식재산센터(055-210-3098)

2026년 달라지는 벤처투자제도

1.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1 벤처투자회사



투자 의무 이행기간 연장



연도별 투자 의무 완화



사후적 상충제집단 지분 보유 허용



선의의 양수자 보호 위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제한



핀테크 분야 기업 투자 허용



VC 간 인수합병 허용 확대

2 벤처투자조합



펀드별 투자 의무 폐지



3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의무 대상 확대



결성규모 완화



최초 출자금액 하향

2026년 달라지는 벤처투자제도

4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

<p>개인투자조합</p> <p>초기 창업기업 (3년) + 투자유치 실적없는 4~5년차 기업</p> <p>투자유무 대상 확대</p>	<p>개인투자조합</p> <p>최대 10% → 최대 20%</p> <p>상장법인 투자 완화</p>	<p>창업기획자</p> <p>직접 선발·보육 + 6개월 이상 7년 이내 매각</p> <p>벤처 스튜디오 규제 완화</p>
<p>전문개인투자자</p> <p>1억원 → 5천만원</p> <p>등록 요건 완화</p>	<p>개인투자조합</p> <p>기존 30% → 40% → 49%</p> <p>지역소재기업, 지역소재기업, 출자 지자체 지방공기업</p> <p>법인 출자(간접 포함) 한도 확대</p>	

2. 벤처투자 세제 확대

<p>출자 증기분의 3% → 5%</p> <p>민간 벤처모펀드 법인세 세액 공제 확대</p>	<p>양도차익, 배당소득, 증권거래세</p> <p>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5%)</p> <p>투자목적회사 세제혜택 신설</p>
--	---

3. 벤처투자 기반 강화

<p>국가재정법 상 기금 전체 44개 → 67개</p> <p>벤처투자 가능기금 확대</p>	<p>모태펀드 +10년 → +10년</p> <p>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근거 신설</p>	<p>이해관계인 연대책임 금지</p>
---	---	-----------------------------

